



K-OTC시장 등록기업 공시실무해설

2024. 8.

본 해설서는 「K-OTC시장 운영규정」상 공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에 대해 표준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등록기업의 원활한 공시업무 수행을 돕고자 참고용으로 제작하였으며,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해설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팀(02-2003-9151~7, kotcop@kofia.or.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본서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K-OTC 시장 운영규정」은 '규정'으로 표기합니다.

I. K-OTC 시장 공시제도	1
1. K-OTC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3
2. K-OTC시장 공시제도의 유형	5
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11
4. K-OTC시장 등록법인의 관리	83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93
※ K-OTC시장 공시제도 중 자주 묻는 질문(FAQ)	95
II.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표준모형	103
III. K-OTC시장 운영규정	171
IV.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13

K-OTC시장 공시사항 요약

□ 정기공시 (규정 제46조)

○ 공시서류

①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 규정에서 정한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②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매결산기 경과후 90일 이내 또는 매반기 경과후 45일 이내(마감일 : 토요일, 공휴일 → 다음 영업일)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 등)의 경우 위 공시서류를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로 대체 (또한 동법인은 금융위에 분기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함)

□ 수시공시 (규정 제45조)

No	신 고 사 항 (세부내용)	신 고 시 기	표준모형
1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거래 정지·금지 또는 재개 (p11)	사유발생 당일	p105
2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p14)	사유발생 당일	p106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한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p15)	이사회결의 또는 확인일 당일	p109
4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상호 또는 사업목적 변경 (p17)	주총 또는 이사회결의 1일 이내	p112
5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 (p19)	이사회결의 당일	p115
6	관계법률 등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p33)	사유발생 당일	p124
7	증자 또는 감자 (p35)	이사회결의 당일	p125
8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 (p46)	이사회결의 1일 이내	p135
9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발행 (p50)	이사회결의 1일 이내	p137
10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양수 또는 양도 (p55)	취득일 또는 결정(이사회결의) 1일 이내	p143
11	등록해제신청 결정 (p56)	이사회결의 1일 이내	p145
12	주식배당 결의 (p58)	이사회결의 1일 이내	p146
13	중간배당 결의 (p59)	이사회결의 1일 이내	p147
14	주주총회 개최 결의 및 종료된 때 (p61)	이사회결의 또는 주총 1일 이내	p147
15	최대주주 변경 (p63)	확인일 1일 이내	p153
16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 (p65)	당일, 1일 이내 또는 만료일전 2영업일째가 되는날 당일	p155
17	횡령·배임 사고 발생 (p78)	확인일 당일	p158
18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p80)	확인일 당일	p160
19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 하거나 결정된 때 (p81)	사실발생 당일 또는 1일 이내	p162

□ 조회공시 (규정 제47조)

○ 위 수시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의 사실여부확인 등을 요구받을 경우 또는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법인은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사실에 대해 공시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신고

□ 기타 신고의무 (규정 제9조, 제13조)

- 주주명부요약표 제출 :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 실질주주명부 등(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소유자명세)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해당여부 신고 : 등록법인은 결산기 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시운영시간 안내

- 접수시간 : 09~18시
- 토요일 수시공시사항 발생시 다음영업일 18시까지 공시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주요경영사항보고서 제출의무(자본시장법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No	제 출 사 유	첨 부 서 류
1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부도 확인서,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증명서류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이사회의사록,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증명서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증명서류
4	해산사유 발생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증명서류
5	자본증가 또는 감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결의 (예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은 면제)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6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주채권은행의 결정서·계약서·합의서 등 증명서류
7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	소장 부분 등 법원송달서류 등
8	해외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외국 정부 등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
9	CB, BW, EB의 발행 결정 (예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이사회의사록 등 증빙서류
10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황과 이차지급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1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 (신탁계약 해지)의 결의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12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계약서(계획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의무 존재시))
13	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해당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I . K-OTC 시장 공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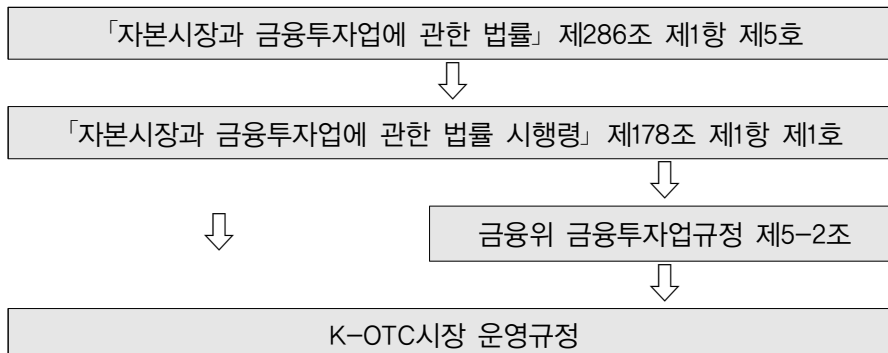
I. K-OTC시장 공시제도

1. K-OTC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가. K-OTC시장의 개념

- K-OTC시장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 제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개설되었음
- 2000. 3. 27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개설, 2005. 7. 13 시장명칭을 “프리보드(FreeBoard)”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 등 제도를 보완함
- 2014. 8. 25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신청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진입·퇴출·매매제도 개선 및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제도 신설 등 투자자보호와 주식거래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K-OTC시장”으로 출범함

【 자본시장 관련 법규상 K-OTC시장의 법적 근거 】



나. K-OTC시장 공시제도

-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K-OTC시장 등록·지정법인도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협회가 지정한 K-OTC시장 지정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상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의무는 없음
- 이에 본장에서는 「규정」상 등록법인의 공시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임

다. 공시의 주체 및 방법

1) 공시의 주체 (규정 제44조, 제51조)

- 등록법인은 K-OTC시장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함
-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해당 등록법인을 대표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각 1명이 지정되어야 함

2) 공시방법

- K-OTC 시장의 공시는 전자공시(K-OTC 공시시스템을 통한 발행기업 직접공시) 방식으로 등록법인이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시
- 공시된 내용은 코스콤 전산망, 금융투자회사 HTS 및 K-OTC시장 홈페이지(www.k-otc.or.kr)등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전달됨

2. K-OTC시장 공시제도의 유형

가. 정기공시 (규정 제46조)

1) 정기공시서류

①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말함(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2) 제출기한

-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 매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반기검토보고서 : 매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3) 제출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및 공시서류를 K-OTC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처

- K-OTC 등록법인 공시시스템(filer.k-otc.or.kr) 전자문서로 제출

※ 문의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팀

(TEL: 02-2003-9151~7, FAX: 02-782-6917)

나. 수시공시 (규정 제45조제1항)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②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 회생절차 개시 신청·개시신청기각·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 회생계획 인가 불인가
 -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 ④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 ⑤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 ⑥ 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⑦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⑧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⑨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⑩ 등록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⑪ 등록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 ⑫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 ⑬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 ⑭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 ⑮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때
- ⑯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⑰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배임금액 상환(고소 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 다만,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 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10.18.>
- ⑱ 등록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하거나 검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기소한 사실 또는 그 결과가 확인된 때 <신설 2022.10.18.>
- ⑲ 기타 ①~⑱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2) 신고기한

- 상기 수시공시사항 ①~③, ⑤~⑦의 경우: 사유발생일/확인일 당일
- 상기 수시공시사항 ④, ⑧~⑮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 상기 수시공시사항 ⑯의 경우: 확인일 당일, 1일 이내 또는 만료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상기 수시공시사항 ⑰, ⑱의 경우: 확인일 당일
- 상기 수시공시사항 ⑲의 경우: 사유발생일 당일 또는 1일 이내

※ 공시접수시간 : 09~18시

※ 토요일 수시공시사항 발생시 당일공시사항은 다음영업일 18시까지, 익일 공시사항은 2영업일째 18시까지 공시

3) 신고방법

- K-OTC 시장의 공시는 전자공시(K-OTC 공시시스템을 통한 발행기업 직접공시) 방식으로 등록법인이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

4) 신고처

- K-OTC 등록법인 공시시스템(filer.k-otc.or.kr) 전자문서로 제출
- ※ 문의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팀(TEL: 02-2003-9151~7, FAX: 02-782-6917)

다. 조회공시 (규정 제47조)

1) 조회공시의 개념

- 협회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
- ①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주요경영사항의 신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고기한 및 방법

-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전자공시(K-OTC 공시시스템을 통한 발행기업 직접공시) 방식으로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문서 사본 등을 첨부)

3) 신고처

- K-OTC 등록법인 공시시스템(filer.k-otc.or.kr) 전자문서로 제출

※ 문의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팀

(TEL: 02-2003-9151~7, FAX: 02-782-6917)

【 진행 단계별 표준모형 : 표준모형을 참조하여 신고 】

단 계	진행정도	표 준 모 형 (예시)	비 고
전면부인	사 실 부 재	- 사실무근 - 특이사항 없음 - 검토(고려)한 바 없음	- 추후 번복 시 불성실공시
검 토 (고 려)	초 기	- 내부적으로 검토(고려)하고 있으며확정(결정)여부에 대해서는 ○○ 까지 재공시하겠습니다	- 재공시기한내 재공시 - 기한내 미공시시 불성실공시
추 진 (계 획)	잠정적	-추진(계획)중이며 최종 확정 (결정)결과에 대하여는 ○○까지 재공시하겠습니다	- 재공시기한내 재공시 - 기한내 미공시시 불성실공시 - 추후 번복 시 사안에 따라 불성실 공시 가능
확 정 (결 정)	최종적	-확정(결정)하였으며 기타/ 구체적(자세한)일정은 ○○까지 재공시하겠습니다	- 재공시기한내 재공시 - 기한내 미공시시 불성실공시 - 추후 번복 시 불성실 공시

라. 기타 신고의무

1) 주주명부요약표 제출 (규정 제9조)

-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소유자명세)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 (규정 제1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주식의 전자등록 (「상법」 제356조의2)

-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음
-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가. 부도의 개념

-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은행에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자금 부족, 어음·수표법 및 당좌거래약관 위배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는 것

- * 어음을 교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의미하나, 별도의 독립된 기구나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

나. 부도사유

- ①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로서 은행으로부터 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 ② 무거래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 ③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부도로서 사고 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입금 통보가 없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 ④ 1년간 4회 이상 예금부족, 사고신고서접수 또는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어음의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의 익영업일)
- ⑤ 위·변조로 인한 어음 부도의 경우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확인서를 교환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각 제출마감일의 익영업일)
- ⑥ 1년간 2회 이상 “한도초과” 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의 익영업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

다. 지급은행, 어음교환소, 어음발행인

1) 지급은행

-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을 제시은행(소지인)에 반환하고, 부도사실을 어음 교환소에 신고

2) 어음교환소

- 부도신고내용 중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도신고 내용을 전 참가은행에 통보

3) 어음발행인

- 어음을 제시한 날에 지급할 자금이 없는 발행인은 늦어도 그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를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함
- 제시은행이나 지급은행은 어음금 변제(소지인계좌에 입금)사실을 어음교환소에 통보하는데 이를 입금통보라 하며,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는 1년간 3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4회째에는 어음금 변제여부에 상관없이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됨

라. 거래정지처분

1) 의 의

- 어음교환소는 부도 중에서 지급자금 부족 등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된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어음·수표의 발행인(당좌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수행

2) 대 상

- 약속어음, 전자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발행자

3) 사 유

- 예금부족 부도로써 입금통보가 없을 때
- 사고신고담보금(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포함)의 미입금 시
- 위변조신고예수금 면제자료(고소장 등)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
- 전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 이상 부도 익영업일 입금통보가 있을 때
-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경우
- 전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 이상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때

4) 효 력

-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인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기존의 당좌(가계당좌) 예금거래를 강제해지
- 거래정지처분자는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당좌(가계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없음

마.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당일 공시하여야 함
 -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때
 - ② 어음교환소가 참가은행으로 하여금 당좌예금거래를 불허하여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③ 당해 정지 또는 금지사유가 해소되어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는 등록해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가. 주된 영업 정지의 개념

- 영업의 정지란 주된 영업면허의 취소·반납, 주된 공장의 생산활동 중단, 주된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워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말함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하여야 함
-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해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가. 도 산

- 도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고, 도저히 경제활동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사태에 이른 것을 말함
- 도산은 설비투자과잉, 매출부진, 경영합리화 지연, 방만한 경영, 자금회수부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얹혀서 발생함
- 기업이 도산하였거나 도산에 직면한 경우 회사를 재건·갱생시키는 제도로 기업회생제도가 있음

나. 기업회생제도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기업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 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원칙적으로 회사대표자가 회사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이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함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당일 공시하여야 함
 -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기각·개시결정·개시결정취소
 - ②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 ③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 ④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 ⑤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는 제외)에는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 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4

**본점소재지, 대표이사(대표 집행임원 포함),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
하기로 한 때**

가. 본점소재지 변경

1) 의 의

- 본점은 회사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며, 이를 정관에 기재해야 함 (「상법」 제317조제2항제1호, 제289조제1항제6호)
- 본점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하며, 변경 후 본점소재지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 정관에 위배되는 본점소재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에 유의

나. 대표이사 변경

-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임
-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결의로 선임함
-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당연 퇴임하며, 이사회결의로 해임할 수도 있음

다. 상호 변경

-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 상호를 변경함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동종업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

라. 사업목적 변경

- 사업목적이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임
- 사업목적의 변경은 당해 법인의 신규 사업진출 등 경영활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판단자료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마.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본점소재지, 상호 또는 사업목적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대표이사의 변경은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결의로 선임되는 바,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5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가. 합 병

1) 합병의 개념

- 「상법」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임

2) 합병의 종류

① 흡수합병

- 수 개의 합병당사회사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

② 신설합병

-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

3) 합병의 절차

①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
(「상법」 제522조제1항, 제362조)

-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②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

-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질권행사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함 (「상법」 제354조 제4항)

③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소집통지 시 합병의 목적, 합병의 방법, 합병의 요령, 합병비용 및 그 산출근거,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상법」 제522조제2항)

④ 합병계약서 공시

- 합병당사회사에서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함 (「상법」 제522조의2)

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합병 반대의사 접수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522조의3제1항)

●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⑥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 합병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상법」 제522조제1항, 제3항)
- 합병당사회사에서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됨 (「상법」 제436조, 제344조제3항)
- 합병승인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⑦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합병승인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상법」 제522조의3제1항)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상법」 제374조의2제2항)

●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상법」 제374조의2)

-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 가능
-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

⑧ **채권자 이의제출의 공고·통지**

- 합병당사회사에서는 합병결의(합병승인 주주총회)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232조제1항, 제530조제2항)

⑨ **채권자의 이의제출**

- 채권자가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상법」 제232조제2항, 제530조제2항)
- 회사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상법」 제232조제3항, 제530조제2항)

● 주식의 병합 및 분할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식이 배정됨
- 합병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멸회사의 주식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자본감소의 절차를 준용함 (「상법」 제440~443조, 제329조의2, 제530조제2~3항)
- 다만 합병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으로 인한 신주권은 합병등기 후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서 교부함

● 구주권 제출 공고·통지

- 소멸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440조, 제530조제3항)
- 소멸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함

● 단주의 처리 (「상법」 제443조)

-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함
-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음

● 전자증권 발행기업의 주식병합 (「상법」, 「전자증권법」)

- 전자증권 발행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등에 따라,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맞추어 주식사무를 처리해야 함
- 회사가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병합기준일")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65조제1항)
- 주식의 병합은 구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상법」 제44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채권자의 동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전자증권법」 제65조제2항)

⑩ 보고총회의 개최

-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면 존속회사에서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상법」 제526조제1항)
- 다만 보고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526조제3항)

● 창립총회 (「상법」 제527조제3항, 제4항)

- 신설합병의 경우 흡수합병과 같은 절차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상법」 제527조제1항)
- 창립총회에서는 합병보고, 임원 선임 등을 하여야 하며,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설립시의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창립총회 역시 보고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음

⑪ 합병등기

- 합병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함 (「상법」 제528조제1항)
- 등기시한은 합병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일 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임

- 합병등기로써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되고(「상법」 제530조제2항, 제235조), 소멸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게 됨 (「상법」 제528조제1항)
- 합병신주를 배정 받은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등기와 더불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됨
- 만일, K-OTC 등록법인이 피흡수 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는, 등록해제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합병등기 된 것) 등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등록해제 조치함

⑫ 합병 후 공시

-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경과사항, 합병을 한 날,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과 채무액 및 기타 합병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개월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함 (「상법」 제527조의6)

⑬ 신주의 발행 및 교부

- 신주의 발행 및 교부 등과 관련하여 협회에 주권불발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주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4)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합병은 주주의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나 회사로서는 승인결의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시간적, 사무적인 부담이 되므로 「상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회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두고 있음

① 간이합병

- 간이합병절차는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에만 적용되며, 그 요건은 소멸회사 전체 주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에서 소멸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상법」 제527조의2제1항)
- 간이합병 적용요건 중 소멸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수청구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반대주주가 있을 때에는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준수해야 함 (「상법」 제527조의2제2항, 제522조의3제2항)
- 소멸회사에서는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527조의2제2항)
- 주주는 이 공고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앞의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522조의3제2항)
- 간이합병의 경우 합병승인주주총회의 생략 및 간이합병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 절차 이외의 합병절차는 합병의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함

② 소규모합병

- 소규모 합병절차는 흡수합병시 존속회사에만 적용되며, 그 요건은 존속회사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상법」 제527조의3제1항)

-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 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나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정식 합병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함 (「상법」 제527조의3제1항, 제4항)
- 소규모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함 (「상법」 제527조의3제2항)
- 주주에 대한 공시절차로서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합병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527조의3제3항)
- 소규모합병 절차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3제5항)
-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승인주주총회의 생략,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이외의 합병 절차에 대하여는 합병의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함

나.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 영업의 양도·양수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로서의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아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음 (「상법」 제374조제1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②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③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등을 위한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함 (「상법」 제374조제2항)

다. 회사분할

1) 회사분할의 개념

- 회사분할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
- 분할하는 회사는 소멸하거나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게 되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

2) 분할의 방법

① 단순분할

- 단순분할이란 영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함 (「상법」 제530조의2제1항)
- 단순분할은 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다시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구분되며, 또한 주식배정방법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 물적분할 (「상법」 제530조의12)

물적분할이란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말함

② 분할합병

- 분할합병이란 회사의 영업을 분할하여 일부 영업을 기존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회사들과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함 (「상법」 제530조의2제2항)
-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합병과 존속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상대방회사에서는 흡수 또는 신설 합병이냐에 따라 흡수분할합병 및 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됨

③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상법」 제530조의2제3항)

3) 회사분할의 절차

① 이사회 결의

- 회사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내용과 회사분할 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결의해야 함
- 회사분할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결의사항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②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질권행사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함 (「상법」 제354조제4항)

③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회사분할의 경우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 결의 외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상법」 제530조의3제4항, 제6항)
- 상기 주주를 포함한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 (「상법」 제530조의3제4항, 363조제1항)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 요령도 통지·공고하여야 함 (「상법」 제530조의3제4항)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도가 적용되므로, 주총소집 통지·공고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을 통지·공고하여야 함 (「상법」 제530조의11제2항)

④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서는 분할승인 주총일 2주전 부터 분할합병 등기 후 6월간 아래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함 (「상법」 제530조의7)

● 분할시 공시서류 (「상법」 제530조의7)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의사 접수(분할합병만 해당)

-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530조의11제2항, 제522조의3)

⑥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한 분할승인 결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상법」 제530조의3제1~3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함 (「상법」 제530조의3제6항)

- 분할승인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결과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⑦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분할합병만 해당)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2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상법」 제374조의2제2항)

⑧ 채권자 보호절차

- 분할합병은 채권자로서는 담보재산과 책임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됨 (「상법」 제530조의11제2항, 제527조의5)
-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때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됨 (「상법」 제530조의9제2항 및 제3항)

⑨ 주식의 병합절차

- 존속분할과 존속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식의 병합절차가 요구됨

⑩ 보고총회의 개최

- 존속분할 또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면 존속하는 회사에서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함 (「상법」 제530조의11제1항, 제526조제1항)
- 보고총회는 이사회에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음 (「상법」 제526조제3항)

⑪ 창립총회의 개최

- 소멸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의함 (「상법」 제530조의4)

- 다만 단순분할설립(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신설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설립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상법」 제530조의4)
- 창립총회는 단순분할설립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으며, 모집설립 및 신설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요구됨 (「상법」 제530조의11제1항, 제527조제1항)
- 창립총회 또한 보고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음 (「상법」 제527조제4항)

⑫ 분할의 등기

- 회사분할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게 됨 (「상법」 제530조의11제1항, 제234조)
- 신설회사는 회사설립등기(「상법」 제317조), 분할회사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그리고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상법」 제530조의11제1항, 제528조제1항)
- 등기할 시기는 분할방법에 따라 다른데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보고총회 종료일(공고일), 단순분할 및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종료일(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함

⑬ 신주의 발행 및 교부

- 신주의 발행 및 교부 등과 관련하여 협회에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라. 공시 및 시장조치

-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 당일 공시하여야 함
- 등록기업이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피흡수합병 확인일 익영업일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함
- 등록법인의 회사분할 중 존속분할의 경우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신주권의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함[단,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등록기업의 경우 분할기일 2일전(신주배정기준일 1일전)부터 신주의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함]

6 관계법을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가. 해산의 개념

-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해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 합병, 분할, 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함

나. 해산사유 (「상법」 제51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특별결의에 의함)

● 법원의 해산명령 (「상법」 제176조)

- 공익적 이유(회사의 존재 또는 그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에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제도
- 회사설립에 관한 준칙주의로 야기되는 폐해를 사후에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가능함

● **법원의 해산판결** (「상법」 제520조)

-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 회사의 존속으로 인한 단체적 구속이 오히려 사원의 이익을 해칠 때에는 법인격을 박탈함으로써 사원의 손실을 방지해 주고자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파산, 회사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 또는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하여야 함
-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은 등록해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함
- 규정에 따라 10영업일 범위내에서 정리매매기간 부여할 수 있으며, 정리매매 완료 후 그 익일 등록해제 됨

7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가. 유상증자

1) 유상증자의 개념

- 유상증자라 함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동시에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말함
- 유상증자는 자본조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 자본금)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함

2) 유상증자의 유형

① 주주배정방식

-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
- ※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한다거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음 (「상법」 제418조)

② 주주우선공모방식

-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 후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③ 제3자 배정방식

- 제3자 배정방식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정관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제3자에게 신주배정 시 부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제3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이 공정해야 함
- ※ 현행 「상법」에서는 신주를 주주외의 자에게 배정할 경우 정관에서 정하되,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④ 일반공모방식

- 일반공모방식은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모집하는 것
- 일반공모방식의 경우에도 정관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

3) 유상증자의 절차

① 이사회결의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전에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일정은 준수되어야 함
- 신주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에서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무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신주배정일 등을 결정해야 함 (「상법」 제416조)
-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결의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상법」 제417조)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액면이상으로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족함

② **주간사회사와 인수 계약**

- 주주우선공모 방식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필요한 경우 신주모집과 실권주 처리를 대행할 주간사회사와 인수 및 모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증권신고서 제출**

- 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과거 1년 누계)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효력발생이 되어야만 모집 또는 매출이 가능함(증자 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여부를 사전 검토 요망)

※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과거 1년 누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공모 3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증권신고서와 같이 일정의 대기기간 후 신고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는 없음)

④ **신주발행,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가 경과되면 주권 소지자가 신주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일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주발행,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공고해야 함 (「상법」 제354조제4항, 제418조제3항)

⑤ 신주의 배정 및 청약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하며 신주 청약일 2주전까지 신주배정내역을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419조 제1항, 제2항)

⑥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한 증권인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발행 결의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함 (「상법」 제416조제5호)
- 신주인수권증서는 대체로 청구하는 주주에게만 발행되며, 발행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신주청약일 전일까지임 (「상법」 제416조제6호)

⑦ 신주 청약

- 주주배정방식인 경우 신주의 청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3일간이며, 주금 납입일은 실권주 처리를 감안하여 청약일로부터 대체로 1~2일 후로 정함
- ※ 주주우선공모증자인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청약 후 실권주에 대해 주간사 본·지점을 청약처로 하여 일반에 공모함
- 청약이 종료되면 실권주식수를 파악하여, 배정 시 발생된 단수주와 함께 이사회 결의로서 인수자를 정함

⑧ 주금 납입 및 증자 등기

- 신주 청약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에 미리 납부한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대체하여 납입하게 됨
- 증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는 주금납입일부터 2주 이내에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하여야 함 (「상법」 제317조)

⑨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⑩ 청약결과 통보

- 청약결과에 따라 주주별 최종배정명세를 작성하여 신주권 소요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의개서대행회사에는 늦어도 주금납입 후 3일 이내에 청약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⑪ 신주의 발행 및 교부

- 신주의 발행 및 교부 등과 관련하여 협회에 주권불발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주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나. 무상증자**1) 무상증자의 개념**

-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 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회사의 실질재산에는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증자방식
- 무상증자는 「상법」상 이사회결의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관에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함 (「상법」 제461조)

2) 무상증자의 유형

①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음

● 법정준비금

①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

- 손익거래에서 발생
-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

② 자본준비금 (「상법」 제459조)

- 자본거래에서 발생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회사분할차익 및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법정준비금의 용도는 결손전보 및 자본전입으로 제한되며, 결손전보시에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하여야 하고, 자본전입에는 그 전입순서에 제한이 없음

② 기타 적립금의 자본 전입

- 법정준비금 이외의 무상증자의 재원으로는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이 있음

3) 무상증자의 절차

① 이사회결의

-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전에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일정을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확정된 일정은 준수되어야 함
- 무상증자는 정관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 결의 후 결의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② 신주발행,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주권 소지자가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명의개서, 질권등록·말소 등을 마칠 수 있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주발행,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공고해야 함 (「상법」 제354조, 제461조)

③ 단주의 처리

- 무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단주주에게 그 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④ 증자 등기

- 무상증자의 효력은 신주배정 기준일 또는 주총일에 발생하며, 효력발생일 부터 2주 이내에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증자 등기를 하여야 함 (「상법」 제317조)

⑤ 신주의 발행 및 교부

- 신주의 발행 및 교부 등과 관련하여 협회에 주권불발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주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 자본감소**1) 자본감소의 개념**

-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회사채권자 등에게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상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율함
- 자본감소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와 회사의 결손으로 인하여 명의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자본감소의 방법

① 액면가의 감액

- 주식의 액면가액만 줄이고 발행주식수는 그대로 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해야 하므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함

- 액면가의 감액 방법에는 액면가 감소액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실질상의 자본감소와 자본금 결손으로 인하여 액면가 감소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는 명목상의 감소가 있음

② 주식수의 감소

- 주식의 병합 : 주식의 병합이란 수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것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발행하는 방법(명목상의 자본감소)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방법

● 임의소각과 강제소각

- 임의소각은 소각에 동의한 주식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에 실시
- 강제소각은 동의에 관계없이 발행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

●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 유상소각은 주식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주금을 지급하는 것
- 무상소각은 주식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3) 자본감소의 절차

① 이사회 결의

-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 단수주 처리방법 등 자본감소의 방법과 자본감소 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
-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결의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②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

-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함 (「상법」 제354조제4항)

③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통지

- 명의개서대행회사는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 (「상법」 제438조제2항, 제363조제1항)

④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자본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자본감소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게 되는 경우와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소각 등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별도로 요구됨 (「상법」 제344조제3항, 제435조)
-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⑤ 채권자 보호절차

-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439조제2항)
- 자본감소에 반대하거나 자본감소 조건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상법」 제232조제3항)

⑥ 구주권 제출(주식병합의 경우)

- 발행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본감소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함 (「상법」 제440조)
-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 발생함 (「상법」 제441조)

● 전자증권 발행기업의 주식병합 (「상법」, 「전자증권법」)

- 전자증권 발행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등에 따라,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맞추어 주식사무를 처리해야 함
- 회사가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구주권 제출·공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병합기준일")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65조제1항)
- 주식의 병합은 구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상법」 제44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채권자의 이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전자증권법」 제65조제2항)

⑦ 단주의 처리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단주주에게 그 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⑧ 자본감소 변경등기

-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는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하여야 함 (「상법」 제317조)

⑨ 감자신주 발행 및 교부

- 신주의 발행 및 교부 등과 관련하여 협회에 주권불발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주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주식소각

① 강제소각의 경우

- 강제소각의 경우 발행회사에서는 병합절차와 같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각한다는 뜻과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상법」 제343조제2항, 제440조)
-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한 때 발생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절차가 종료한 때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함 (「상법」 제343조제2항, 제441조)
- 유상소각의 경우 소각대금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소각의 결과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주식병합 절차를 준용함

② 임의소각의 경우

- 임의소각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것임 (「상법」 제341조제1호, 제342조)
- 임의소각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공고하여야 하며, 소각의 효력은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 발생함

라. 공시 및 시장조치

-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본감소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 당일 공시하여야 함
 -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 무상증자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 조치가 취해지고, 권리락 조치일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규정 제37조제1항제11호)
 - 자본감소의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신주의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함
 - 다만,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감자기준일* 1일 전부터 신주의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 ※ 감자기준일은 감자된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 기준일로, 전자증권법상 주권의 ‘병합기준일’의 1일 전을 말함

매매거래정지(D일)	신주의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정지
감자기준일(D+1일)	감자의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 기준일
병합기준일(D+2일)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 (=효력발생일)

8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가. 주식분할

1) 주식분할의 개념

- 주식분할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화하여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유동성이 제한되는 경우 유동주식수를 증가시켜 주식의 유동성을 도모하기 위해 많이 이용됨

- 주식분할후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함 (「상법」 제329조의2제2항)

● 주식병합

- 주식병합은 수 개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는 것
- 자본감소 및 합병의 경우 많이 사용하며, 단순히 권면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사용됨
- 주식분할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됨

2) 주식분할의 절차

① 이사회 결의

- 분할내용 및 주총소집 결의
 -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주식분할 내용과 주식분할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결의해야 함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공고해야 함 (「상법」 제354조제4항)
- 권리주주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 (「상법」 제363조제1항)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주식분할은 정관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 주주총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③ 구주권의 제출

- 주식분할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당해 법인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 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함 (「상법」 제329조의2제3항)
- 구주권 제출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 하도록 이의가 없으면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상법」 제442조제1항)

④ 단주의 처리

- 주식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지급하여야 함

⑤ 등기

- 주식분할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후로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나. 무액면주식의 발행

1) 무액면주식의 발행

-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이 가능함.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상법」 제329조 제1항)

-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1/2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함. 이 경우 주식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상법」 제451조 제2항)

2) 무액면주식의 전환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상법」 제329조 제4항)
- 발행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액면전환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함 (「상법」 제440조)
- 액면전환의 효력발생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 발생함 (「상법」 제441조)
- 구주권 제출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익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익이 없으면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상법」 제442조제1항)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주식분할, 주식병합 및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신주권의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함(단,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등록기업의 경우 신주의 효력발생일 2일전부터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함)

● 전자증권 발행기업의 주식병합 등(「상법」, 「전자증권법」)

- 전자증권 발행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등에 따라,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맞추어 주식사무를 처리해야 함
- 회사가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구주권 제출·공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병합기준일")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65조제1항)
- 주식의 병합은 구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상법」 제44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채권자의 이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전자증권법」 제65조제2항) ※ 주식분할의 경우에도 동일

9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가. 회사채

1) 회사채의 개념

- 법인이 경영활동상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직접금융의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유형은 유상증자와 회사채의 발행임
- 회사채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임

2) 회사채 발행절차

① 이사회 결의

- 회사채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함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도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함
- 이사회결의에서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의 상환방법, 사채의 발행방법,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의 발행 예정일, 사채의 상환예정일,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장소 등을 결정하여야 함

② 증권신고서 등 제출

- 「자본시장법」상 사채의 모집·매출은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모집·매출을 할 수 있음
-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모두 사채권으로 동일한 종류의 증권으로 보며 모집가액의 총액(1년간)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야 발행할 수 있으며,
- 모집가액의 총액(1년간 누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공모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이 경우 증권신고서와 같이 일정의 대기기간 후 신고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는 없음)

③ 인수 및 납입

- 회사채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약에 대해 배정이 있으면 인수는 확정되고 사채계약이 성립함
- 회사채의 모집을 완료하면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함

④ 등기

- 회사채는 일정기간 후에는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공시의 실익이 없어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등기를 요함

나.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개념

- 전환사채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임
- 전환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됨
- 「상법」상 전환사채의 발행은 일반 회사채와 같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게 하고 있음

2) 전환사채의 발행절차

①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 이사회에서는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사채의 액을 결정해야 함
- 전환사채는 일종의 사채이지만 장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실질상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아 「상법」에서는 주주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시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상법」 제513조제3항)

- 모집이외의 방법(사모)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해야 함

② 배정일 공고

- 주주가 인수할 전환사채의 액이 결정됨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짐
- 신주발행에서와 같이 인수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인수권을 갖는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함 (「상법」 제418조제3항)

③ 인수 및 납입

- 전환사채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전환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할 전환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약에 대해 배정이 있으면 인수는 확정되고 전환사채계약이 성립함
- 전환사채의 모집을 완료하면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전환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함

④ 등기

- 일반 회사채와 달리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완료 후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소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3) 전환사채의 전환

① 전환의 청구

- 전환청구기간내에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②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김에 따라 전환청구를 한 때에 전환사채권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됨

③ 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에 의한 변경등기

-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함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함
-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이 소멸되는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된 사채권은 존속하며 단지 그 사채에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고, 그 옵션은 정해진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사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전환사채와 동일

라. 공시 및 시장조치

-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발행에 관해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사채 (중도) 상환 결의 시 등에도 공시하여야 함

10

등록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가. 특허권의 개념

-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임
- 기업이 자체기술로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취득하여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발행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 특허권 취득 공시의 사유발생일은 특허수수료 납부일로 봄(다만, 등록법인이 특허취득 사실을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인지하였음을 소명하고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 특허업무 대리인이 특허취득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특허업무 대리인에게 공시 관련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람

● 실용신안권

- 이미 발명된 것들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이 고안해 낸, 특허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것으로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
-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하여서는 실용신안은 존재할 수 없음

● 상표권

-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며, 이러한 상표를 설정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 의장권

-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의장(design)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

11 등록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가. 등록해제의 결정

- 등록해제는 거래의 안정성 및 주식의 환금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여야 함
- 「K-OTC시장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해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 총회의사록사본 등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해야 함
- 등록법인이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협회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음

나. 등록해제 절차

1) 회사의 등록해제 이사회결의

① 등록해제일정

- 등록해제를 결의할 주총예정일 및 등록해제신청 예정일 등 결의

②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대책

- 공개매수자 : (주)○○○ 또는 당사의 최대주주 등
- 공개매수방법 : K-OTC시장을 통한 매수 또는 장외매수
- 공개매수가격 : 회사가 정한 가격
- 공개매수기간 : 1개월 이상
- 등록해제 이후 6개월간 대주주 등의 잔존 소액주주 대상 매수 약속

2) 등록해제 관련 주주총회

- 등록해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공개매수 실행

3) 회사의 등록해제 신청

- ① 공개매수 완료 후 등록해제 신청
- ② 등록해제 신청시 첨부서류
 - 등록해제신청서
 - 등록해제결의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등록해제결의관련 주주총회결의의사록 사본
 - 등록해제관련 투자자보호대책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대주주 등의 공개매수결과 보고서
 - 주주현황(최대주주 등을 포함한 변동 전 주주현황, 변동 후 주주현황)
 - 등록해제 후 소액주주의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확약서

4) 매매정지 및 정리매매

- 등록해제신청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후 10영업일간 정리매매기간 부여
- ※ 단, 협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리매매 등의 등록해제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아니함

5) 등록해제

- 정리매매 완료 후 그 익일 등록해제 됨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이 등록해제 신청을 결의하는 경우 등록해제 관련 일정, 투자자보호대책,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해야하며, 등록해제 관련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에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에 대해 주총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등록법인이 등록해제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공개매수 절차 등을 거친 후, 등록해제를 협회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해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함
 ※ 단, 협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음(「K-OTC시장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 등록해제가 되는 등록법인은 등록해제 이후 6개월간 잔존 소액주주 대상 매수 확약의 구체적인 방안 등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공시하여야 함

12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가. 주식배당의 개념

- 이익의 배당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를 주식배당이라 함

나. 주식배당의 요건

-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상법」 제462조제1항)
- 미발행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이 주식배당을 이사회에서 결의(배당기준일 15일전)하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1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가. 중간배당의 개념

- 중간배당이란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결과 예상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이익배분
- 중간배당은 이익확정 전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음

나. 중간배당의 요건

- 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연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할 수 없음)
-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 이사회 결의를 요함(주주총회의 추인을 요하지 않음)
- 중간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는 정관이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임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실시할 수 있음(금전배당시 그 금액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중간배당 한도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상법」 제462조의3제2항)

다. 중간배당의 제한

-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처분한 이익을 재원으로 실시하므로 장차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법」 제46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요건을 위반하여 이익 없이 배당한 결과가 발생함
- 이에 「상법」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이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상법」 제462조의3제3항)

●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표준정관 (예시)

제○○조(중간배당)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월 ○○일 ○○시 현재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 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제○○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라. 공시 및 시장조치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고 있는 등록법인은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14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가. 정기주주총회

1) 정기주주총회의 개념

- 주식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결산기마다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함
-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이 주요 의제이나 다른 의안을 다루어도 무방함

2) 정기주주총회 세부 진행사항

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는 결산기말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임
- 정관에서 결산 기준일과 주주명부폐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준일 공고가 요구되지 않으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산기 말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함 (「상법」 제354조제4항)

② 권리주주 확정

- 주주는 주주명부에 자기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명부주주와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실질주주로 구분되며, 실질주주는 명부주주와 달리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에만 파악됨
- 결산기준일이 되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 청구사항을 마감하여 명부주주를 확정함. 이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실질주주명세가 통보되면 명부주주와 실질주주간 동일인 합산을 거쳐 최종 권리주주를 확정하게 됨

③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주총일시, 장소, 안건 등을 결의하여야 함 (「상법」 제362조)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결의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 명의개서대행회사에도 주주별 주총 참석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④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는 강행규정이므로 구두 또는 회람 등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363조)
- 정관에서 서면결의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총회소집 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상법」 제368조의3)
- 의결권수가 표시된 주주총회 참석장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작성하며, 위탁회사는 회의 목적사항이 표시된 소집통지문, 의결권행사 안내문, 정관 변경안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한 날까지 송부하여야 함

⑤ 주주총회 개최

- 정해진 일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개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또는 신고하여야 함

나. 임시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와는 그 소집시기가 다를 뿐 그 권한이나 결의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음.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확정기준일과 폐쇄기간을 정해야 함.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정기(임시)주주총회 개최의 이사회결의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주총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15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가. 최대주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의한 최대주주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

나.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
- ② 6촌 이내의 혈족
- ③ 4촌 이내의 인척
- ④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⑤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⑥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⑦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⑧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부터 ⑦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
- 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부터 ⑧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임원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③ 단독으로 또는 1)의 각 항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1)각 항목의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2)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 ④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및 그 임원

3) 해당 법인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 ②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16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때
----	---

가.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기준(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규모 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상한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② 독립성 기준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2)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 적용기간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② 중소기업 졸업유예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③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

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087호, 2016.4.5.)

-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다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106호, 2016.4.26.)

-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378호, 2017.10.17.)

-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60호, 2017.12.29.)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중견기업

1) 중견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기업유형, 업종,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 유형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이 아닐 것

② 업종기준

- 다음 항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③ 상한기준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④ 독립성 기준

- 다음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제한특별법 등)

〈조세제한특별법 시행령〉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2.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 벤처기업

1) 벤처기업의 개념

-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임

●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삭제 <2020. 2. 11.>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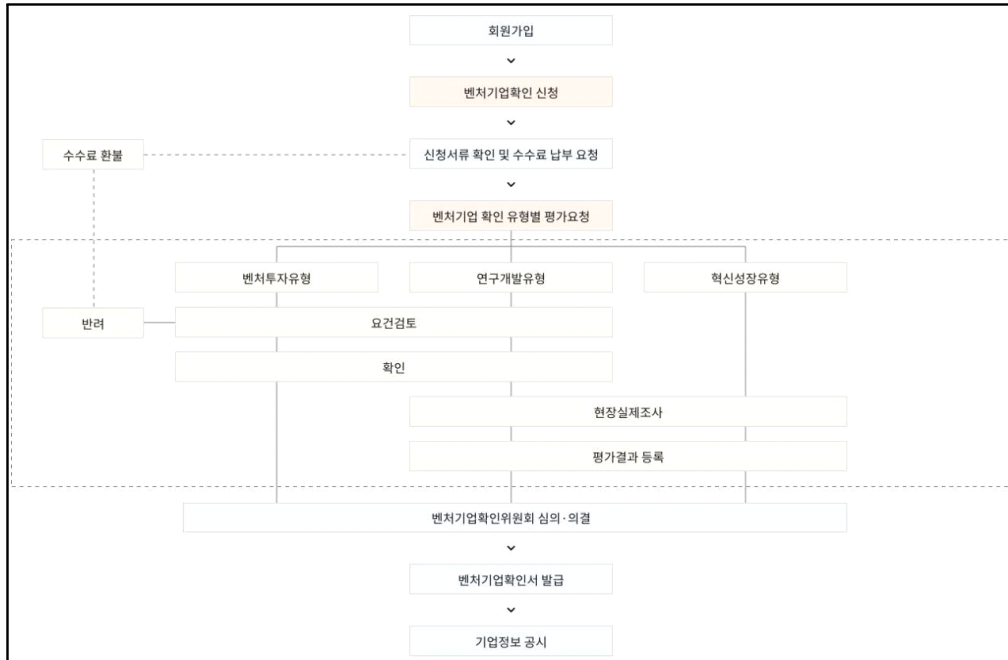
2) 벤처기업 확인요건

확인 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 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적격투자기관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연구개발 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상이)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혁신성장 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외 6개 기관*
예비벤처 유형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벤처확인 신청절차

- (사)벤처기업협회 운영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다. 공시 및 시장조치

1) 중소기업

- 등록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공시하여야 함

①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지위 취득
 - 중소기업 적용기간,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②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 미충족 사유, 미충족 일자,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유예기간(특례기간),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③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 만료

- 신고시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일, 기타 참고사항 등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첨부

④ 중소기업 졸업 유예 또는 특례 적용 중단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졸업 유예(특례) 적용 중단
 - 중소기업 졸업 유예(특례) 적용 중단 사유, 중소기업 졸업 유예(특례) 적용 중단일,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첨부

2) 중견기업

- 등록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①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내용 : 중견기업 지위 취득
 - 중견기업 적용기간,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②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중견기업 요건 미충족
 - 미충족 사유, 미충족 일자,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3) 벤처기업

- 등록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발급사실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공시하여야 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신고시기 : 발급사실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내용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업 유효기간, 발급사실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②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 신고시기 : 유효기간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전 2영업일
째가 되는 날 당일
- 신고내용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만료일,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여부 및 신청일 등
- 신고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벤처기업 확인 취소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벤처기업확인 취소
 - 취소사유, 취소일,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첨부

17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한 때

가. 횡령·배임 사고의 규모

- 임원의 경우 : 횡령·배임 발생 규모와 무관하게 공시
- 직원 등의 경우 :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
여 공시

1) 임원 등의 범위

- 상법상 이사 및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뜻하며, 퇴직한 자를 포함
- 예를 들어 최대주주, 실질경영자, 미등기임원 등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확인되는 경우 공시의무 발생

2) 진행사항에 따른 공시

- 최초 ‘횡령·배임혐의 발생’ 또는 ‘횡령·배임사실 확인’ 공시 이후, 다음의 진행사항이 확인될 때 당일 공시의무가 발생
- 횡령금액 상환, 고소장 접수·취하, 법원 판결, 항소 제기 및 판결
- 횡령금액 증감이 있거나 또는 공범인 혐의자가 추가되는 경우
- 최초 공시 당시와 다른 사건이지만 최초 공시 시점과 동일한 혐의자에 대한 추가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경우 등

3) 확인방법

- 악의적 고소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에 대한 혐의는 당해 회사가(대표이사 포함) 직접 확인하거나 감독기관(구속, 검찰기소)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판단주체가 당해법인의 경우 ‘횡령·배임혐의 발생’, 검찰인 경우 ‘횡령·배임 사실 확인’ 서식으로 각각 공시함

4) 조회공시 요구

- ‘횡령·배임 관련 구속, 검찰기소 등에 대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협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해당법인의 확인을 요구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확인은 일반적으로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의 확인 즉시 공시하여야 하며, 횡령·배임은 해당법인(대표이사 등 포함)이 직접 확인하거나 검찰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음

18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때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의 개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법인의 실적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말함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 포함)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확인이 있을 때 사유 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함
 - ①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②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가 확인된 때
 - ③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가 확인된 때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함

19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가. 공시내용

- 수시공시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공시하여야 함

[예시]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 타법인 출자, 처분, 주식의 취득, 처분을 결정한 때
- 시설을 증설하거나 신규로 시설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때
- 공사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 영업 및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때
- 타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채무보증하기로 결정한 때
- 외화장기차입금 및 장·단기차입금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차입 및 상환을 결정한 때
- 등록법인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권리의 변경, 변조, 위조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
-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반환청구 등의 소송과 합병무효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소송 등이 발생한 때
-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를 결정한 때
-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지사 설치 등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때
- 기술도입계약, 기술이전합의서 및 기술제휴협정을 체결한 때
- 지점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 화재가 발생한 때
- 관계회사가 해산된 때
-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 또는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함

〈참고 : 주식의 전자등록〉

□ 개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에 따라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 「전자증권법」 등을 통해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 및 전자증권 전환 관련 사항

- 상장주식 등은 의무적용대상임
- 비상장회사는 전자증권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전자증권 전환이 가능

◎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절차

- ①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임 및 정관 개정
-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 제출
-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 전환 신청, 전자등록일 지정(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후)
- ④ 관련 사항*을 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서면)

* 주권효력상실, 전자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요청 사실

□ K-OTC시장 공시·시장조치 관련 유의사항

- 전자증권의 경우, 구주권제출절차 폐지 및 교부일 없이 유통일 당일 매매가 가능한 등 증권 발행·유통 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공시, 매매거래정지, 제출서류, 변경·추가 등록 승인 시점 등이 변동. 이에 주식사무일정 및 공시·서류제출 등에 주의 필요
- 변경·추가 등록 사유 발생 등과 관련하여 협회에 주요경영사항 신고 시, 투자자에게 정확한 일정을 전달하고 주식 매매거래 일정이 원활하도록 전자증권 발행 여부를 공문에 기재

4. K-OTC시장 등록법인의 관리

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규정 제49조)

1) 개 념

- 등록법인이 규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신고 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반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해당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 1영업일 또는 제출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신속·정확한 공시를 촉구하는 제도임

2) 정지공시

① 유형

-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를 기한 (결산종료후 90일, 반기종료 후 45일)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재

-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감사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시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상에 공표하며,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매매거래정지됨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제됨)
 - 기한내 제출을 하더라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등에는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후 등록해제됨

-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반기검토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시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상에 공표하며, 1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제됨)

3)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

① 유형

- 공시불이행
 -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조회공시사항을 신고기한(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시변복
 - 수시공시, 조회공시에 의하여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 조회공시에 대하여 “사실무근” 또는 “중요한 정보 없음”이라고 공시한 후,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 공시지연
 -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정해진 신고기한보다 늦게 수행한 경우

② 제재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호가중개시스템상에 공표하며 1영업일간 (또는 공시일 까지) 매매거래정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내 6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등록해제됨)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예외

등록법인이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 ②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③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밖에 해당 등록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매매거래 정지제도 (규정 제37조)

1) 개 념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호가중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함

2) 매매거래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

① 불성실공시 발생시

- ➡ 1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다음 ②, ③, ④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

②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매매거래정지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매매거래정지

③ 등록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등록해제사유(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는 제외) 발생시
- ➡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규정 제37조제1항제3의2호)

- ➡ 확인일 익영업일 매매거래정지

● 등록해제사유 (「K-OTC시장 운영규정」 제9조)

- ① 협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한다. 다만, 제3호 단서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등록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3.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클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

- 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6.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9.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12.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 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 따른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하며, 위 실질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를 통틀어 이하 "실질주주명부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등록일(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부변경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한다.
 - 가. 보통주식의 소액주주의 수가 50인 미만
 - 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
 13.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14.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5.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6. 임직원 등(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관련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만, 횡령·배임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7.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업의 계속성 또는 K-OTC시장의 건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제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② 제1항제12호를 적용함에 있어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실질주주명부등(전산파일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하 "주주명부요약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해당 등록법인의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해당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거나, 등록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요약표등을 정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종목을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④ 등록법인에 대하여 제47조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 시 그 제출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매매 거래정지
- 다만,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
 - ➡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 ➡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매매 거래 정지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 ➡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서면결의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 협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 연장 가능
- ⑥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 ⑦ 호가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가중개시스템 전체의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 ⑧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배임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 해당 혐의 확인일과 그 익영업일

- ⑨ 등록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하거나 검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기소한 사실 또는 그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 ➡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의 제출일까지
- ⑩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유발생일의 익영업일
- ⑪ 제54조제1항에 따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
 - ➡ 조치일
- ⑫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1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3) 매매거래 정지기간의 연장 등

-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가능
- 등록·지정해제에 따른 정리매매(제11조 및 제16조의2) 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다. 안내사항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 (규정 제53조)

1) 개 념

-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등록종목에 관한 사항이나 시장에 관한 안내사항 또는 등록해제사유에 이를 위협이 있는 시장조치사항(투자유의사항)이 있을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2) 안내사항

- ① 소속부 변경
- ② 신규등록, 변경(추가)등록 및 등록해제 종목,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 ③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투자유의사항

- 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②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 ③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 공시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⑥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⑦ 등록법인이 제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⑧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배임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다만,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 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⑨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 (보통)결의

- 결의기준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
- 결의사항
 1. 이익배당(주식배당)
 2.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3.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4. 자기주식의 취득 승인 등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결의기준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
- 결의사항
 1. 정관 변경(본점소재지, 상호, 사업목적 등)
 2. 주권 액면분할, 액면병합, 이익소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 자본 감소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8. 액면 미달 신주 발행 등

□ 이사회 결의

- 결의기준 :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의 과반수
- 결의사항
 1. 최초 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단, 일정 범위를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 가능)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 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
9.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11.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겸업 허용
14. 주식의 양도 승인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불필요)
16.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8. 자기주식 취득
19. 중간배당
20.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K-OTC시장 공시제도 중 자주 묻는 질문(FAQ)〉

K-OTC시장 등록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도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등 상장법인이 수행하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 ☞ 모든 등록법인이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단,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혹은 외감대상법인으로서는 증권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과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될 경우, 비상장법인이라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DART와 K-OTC시장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보고서는 DART에만 제출하면 됨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K-OTC시장 공시는 어떻게 하나요?

- ☞ 공시내용에 따라 사유발생일 당일 또는 1일 이내(각 수시공시사항의 신고기한 참조)에 공문(공시문안 포함) 및 증빙서류를 공시운영시간(09:00~18:00) 내에 전자공시(K-OTC 공시시스템을 통한 발행기업 직접공시) 방식으로 등록법인이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며, 공시된 내용은 코스콤 전산망, K-OTC시장 홈페이지(www.k-otc.or.kr) 및 금융투자회사 HTS 등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전달됨
- 신고처 : K-OTC 등록법인 공시시스템(filer.k-otc.or.kr) 전자문서로 제출
- ※ 문의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팀(TEL: 02-2003-9151~7, FAX: 02-782-6917)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K-OTC시장 등록법인은 K-OTC시장에 신고(수시공시)하는 것 외에 전자공시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나요?

- ☞ 전자공시를 통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K-OTC시장 등록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단, K-OTC시장 등록법인 중 사업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함

토요일에 공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시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 • 정기공시 - 제출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제출
- 수시공시 - 당일 공시사항은 다음영업일 18시까지, 익일 공시사항은 2영업일째 18시까지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결의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하는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없나요? K-OTC시장 등록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여부와 상관없이 K-OTC시장에 공시할 필요는 없나요?

-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결의한 경우 금융위 이사회결의일 다음날까지 DART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DART 공시의무가 없음
-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여부와 상관없이 K-OTC시장 등록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결의한 경우 경영상 중요내용에 해당되므로 이사회결의일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함(「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제19호 참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협회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수가 변경되므로 「K-OTC시장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사유발생일(주금납입일 등)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소액출자자가 아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K-OTC시장내에서 매도하고자 할 때 공시해야 하나요?

- ☞ 소액출자자가 아닌자(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3억원이상 보유한 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자)가 매도할 경우 K-OTC시장 등록법인은 매도건별로 DART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 세부내용 p.101 참조)를 제출해야 함. 주주가 아닌 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등록법인은 소액출자자가 아닌자의 매도시 미리 공시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특정 주주(A)의 매도에 관한 공시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다른 주주(B)가 매도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

* 참고 : K-OTC시장을 통한 소액출자자의 매출 시 특례 등

* 참고2 :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공시실무자 > 발행공시 > 업무절차 >
2.증권신고서의 제출 중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도 안내”

소액출자자가 아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K-OTC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매도하고자 할 때 공시해야 하나요?

- ☞ 소액출자자가 아닌자(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3억원이상 보유)가 장외에서 매도(공모가 아닌 경우)할 경우 별도의 공시의무는 없음. 다만 장외매매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날(양수도체결일 등)로부터 1일 이내에 K-OTC시장에 공시하여야 함

* 참고 : K-OTC시장을 통한 소액출자자의 매출 시 특례 등

소액주주의 매출시 특례조항이 있나요?

- ☞ K-OTC시장(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주주의 매출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

* 참고 : K-OTC시장을 통한 소액출자자의 매출 시 특례 등

〈참고 : K-OTC시장을 통한 소액출자자의 매출 시 특례 등〉

□ 개요

- K-OTC시장에서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매출)하는 것도 공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하여진 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K-OTC시장 등록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소액매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 적용요건

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 K-OTC시장(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매출대상 증권의 발행인(회사)이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인이 소액공모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 소액출자자(발행인, 인수인 제외)가 매출하는 것일 것
 - 발행인이 소액공모공시서류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서류 (즉 호가중개 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을 소액매출 개시일의 3일전까지 제출하여 공시한 경우

* 소액출자자 :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 제출서류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 감사보고서(최근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 반기검토보고서 포함)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매출을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제출서류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및 협회에 제출

※ 유의사항

- K-OTC시장을 통해 소액출자자가 아닌자(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보유)의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건별로 소액공모공시 의무(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세부내용 p.101 참조)가 이행되어야 함
- 즉, 회사가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보유 특정 출자자의 매출에 관한 소액공모 공시 의무(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세부내용 p.101 참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소액출자자가 아닌 자가 매출하고자 할 때는 회사는 별도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해당 모집·매출전에 행하여진 모집·매출시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반기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②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 K-OTC시장(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매출대상 증권의 발행인이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으로서 매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①상의 서류(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출을 면제함

□ K-OTC시장 등록법인의 의무

- K-OTC시장 등록법인은 매결산기 및 반기별로 다음 서류를 금융위 및 협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 발행인에 관한 사항(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및 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확인이 필요함

※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분기보고서는 협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금융위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증권신고서 등 제출여부 결정 사례 】

※ 주식발행의 경우(비상장법인이며 기존에 공모실적 없음을 가정)

순번	발행일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자수	신고서 제출여부
①	2019. 7. 3	7억원	7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②	2020. 1.27	9억원	60명	신고서 제출대상
③	2020. 7. 2	8억원	40명	신고서 제출대상
④	2020. 8.11	5억원	3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 순번 ① 〉 공모에 해당하나 1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은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임

〈 순번 ② 〉 공모에 해당하며, 이번에 모집하려는 금액과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7억원+9억원)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임

〈 순번 ③ 〉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4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도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8억원+7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 대상임

〈 순번 ④ 〉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3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은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5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임

Ⅱ.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표준모형

Ⅱ.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표준모형

- ‘K-OTC 홈페이지(www.k-otc.or.kr) → 제도/규정 → 공시제도 → 등록법인 공시제도 → 수시공시’에서 모형별 한글파일 다운로드 가능

1. 부도, 은행과의 거래 정지, 금지 또는 재개 (세부내용 참조 : p.11)

○○주식회사 부도발생

- ➔ 신고시기 : 부도발생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부도내용 : 어음부도/수표부도
 - ② 부도금액 : ○○,○○○,○○○원
 - ③ 부도발생은행 : ○○은행 ○○지점, ○○은행 ○○지점
 - ④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년 ○○월 ○○일
 - ⑤ 부도사유 및 경위 : 예금부족, 영업활동 부진 및 매출대금 미회수
 -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현재 공장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임

○○주식회사 은행거래 정지(금지)

- ➔ 신고시기 : 거래정지(금지)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당좌거래 정지(금지)은행 : ○○은행 ○○지점
 - ② 당좌거래 정지(금지)일자 : ○○○○년 ○○월 ○○일

- ③ 당좌거래 정지(금지)사유 : ○○은행 ○○지점 대출금 ○○,○○○,○○○원에 대한 6개월 장기연체
- ④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현재 신규 대출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년 ○○월까지 매출채권 회수 등을 통한 연체대금 상환으로 은행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임

○○주식회사 은행거래 재개

- ➡ 신고시기 : 거래재개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은행거래 정지 · 금지
 - 가. 일자 : ○○○○년 ○○월 ○○일
 - 나. 사유 : ○○은행 ○○지점 대출금 ○○,○○○,○○○원에 대한 장기연체
- ② 은행거래 재개
 - 가. 일자 : ○○○○년 ○○월 ○○일
 - 나. 거래재개은행 : ○○은행 ○○지점
 - 다. 사유 : 차입금 상환
- ③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 ④ 기타(영향 등) : 영업활동의 정상화 및 활성화 예상

2. 주된 영업의 정지 (세부내용 참조 : p.14)

○○주식회사 주된 영업의 (일시)정지

- ➡ 신고시기 : 사유발생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영업정지 분야 : 영업을 정지하는 특정 영업부문의 명칭
- ② 영업정지 내역
 - 가. 영업정지금액(원) : 영업을 정지된 사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 나. 최근매출총액(원) : 최근사업연도 매출총액
 - 다. 매출액 대비(%) : 〇〇.〇〇%
- ③ 영업정지 내용 : 〇〇생산을 일시 중단
- ④ 영업정지 사유 : 원자재의 수입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
- ⑤ 향후대책 : 수입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공급을 협의하고 향후 다양한 수입선 확보
- ⑥ 영업정지영향 : 매출 및 수익 감소
- ⑦ 영업정지 일자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⑧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⑨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원재료만 원활히 공급될 경우 정상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〇〇주식회사 〇〇업 면허(인가) 취소[반납]

- ➡ 신고시기 : 사유발생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면허(인가)내용 : 〇〇업 면허
- ② 면허(인가) 취소[반납] 내역
 - 가. 취소[반납]금액 : 최근 취소[반납]된 사업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 나. 최근 매출 총액 : 최근사업연도 매출총액
 - 다. 매출액 대비(%) : 〇〇.〇〇%
- ③ 취소[반납]사유 및 경위 : 회사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전문화계획에 의거 반납
- ④ 취소[반납]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⑤ 향후대책 : ○○사로의 자산부채 양도 후 청산 예정
- ⑥ 이사회 결의일 : ○○○○년 ○○월 ○○일
-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처분과 관련하여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주식회사 ○○공장 생산활동 중단(재개)

- ➡ 신고시기 : 사유발생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생산중단(재개) 분야 : ○○제품 생산
 - 가. 공장명 : ○○주식회사 ○○공장
 - 나.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② 생산 중단(재개) 내역
 - 가. 생산 중단(재개) 금액 : 생산 중단된 사업의 최근사업년도 생산액
 - 나. 최근 생산 총액 : 최근사업년도 생산총액
 - 다. 생산액 대비(%) : ○○.○○%
- ③ 생산중단(재개) 내용 : ○○제품 및 관련제품의 일시적 생산중단
- ④ 생산중단(재개) 사유 : ○○주식회사로부터 원료공급 중단
- ⑤ 향후 대책 : 대체 원료공급처의 신속한 확보를 통하여 조업재开到 노력하겠으며, 조업중단이 해소되어 정상조업이 개시되거나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⑥ 생산중단(재개) 영향 : 생산중단(재개)에 따라 발생할 매출액 및 손익의 감소 (증가) 예상액 등
- ⑦ 생산 중단(재개) 일자 : ○○○○년 ○○월 ○○일
- ⑧ 생산재개 예정일자(생산활동 중단의 경우) : ○○○○년 ○○월 ○○일
- ⑨ 이사회 결의일 : ○○○○년 ○○월 ○○일
- ⑩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제품 판매활동정지(재개)

- ➔ 신고시기 : 사유발생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판매활동 정지(재개) 품목 및 수량(규모) : ○○제품 1,000Box(10톤)
- ② 정지(재개)일 및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③ 정지(재개)사유 : 원재료 수입국(○○국) 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회수 및 폐기처분 결정
- ④ 손실(수익)예상액 : 10억원(추정치)
 - 가. 전년도 매출액 대비 비중 : ○○%(전년도 총매출액 ○○억원중 ○억원)
 - 나. 전년도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 : ○○%
- ⑤ 영향 및 대책 : 해당 제품의 전량 수거 폐기 및 원재료 수입선 변경

3.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위 사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세부내용 참조 : p.15)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종결, 폐지) 신청

- ➔ 신고시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종결, 폐지) 신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회사결정일) 또는 신청사실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련서류

- ①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당사)
- ② 관할법원 : ○○법원

- ③ 신청사유 : 미수금 회수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대외 차입금증가와 금융비용 증대
- ④ 신청일자 : ○○○○년 ○○월 ○○일
- ⑤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추후 대책강구 예정
- ⑥ 이사회 결의일(회사결정일) :
-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종결, 폐지) 결정

- ➡ 신고시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종결, 폐지) 결정 사실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사건번호 : 2014회합 ○○ 회생
- ② 결정일자 : ○○○○년 ○○월 ○○일
- ③ 관할법원 : ○○법원
- ④ 결정내용
 - 가.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년 ○○월 ○○일
 - 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당사 ○○)
- ⑥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년 ○○월 ○○일
-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종결·폐지” 결정의 경우 ③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출

- ③ 결정내용 및 사유 :
- ④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년 ○○월 ○○일
- ⑤ 향후일정 : 관할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시 법정관리 탈피
-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회생절차계획안 일부변경

- ➡ 신고시기 : 통보접수일 당일
- ➡ 신고서류 : 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변경내용 : 회사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 ② 변경사유 : 인력부족 및 채권자와의 사전업무협의 필요
- ③ 법원인가일 : ○○○○년 ○○월 ○○일
- ④ 법원통보일 : ○○○○년 ○○월 ○○일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소

- ➡ 신고시기 : 항소일 당일
- ➡ 신고서류 : 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항소인 : ○○주식회사
- ② 관할법원 : ○○법원 파산부
- ③ 항소이유 :
- ④ 폐지결정에 대한 항소일 : ○○○○년 ○○월 ○○일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 ➡ 신고시기 : 통보접수일 당일
- ➡ 신고서류 : 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회사회생절차 폐지결정

가. 폐지결정일 : ○○○○년 ○○월 ○○일

나. 관할법원 : ○○법원 파산부

② 회사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항소기각결정

가. 항소일 : ○○○○년 ○○월 ○○일

나. 기각결정일 : ○○○○년 ○○월 ○○일

다. 기각사유 : 향후 회생절차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낮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라. 관할법원 : ○○법원 파산부

마. 결정서 접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4.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상호 또는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용 참조 : p.17)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변경 결의

- ➡ 신고시기 : 본점소재지(주소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 (변경전) ○○시 ○○구 ○○동 ○○번지

(변경후) ○○시 ○○구 ○○동 ○○번지

② 변경사유 : 본사 신축사옥 준공,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 ③ 이전(예정)일 : ○○○○년 ○○월 ○○일
- ④ 주주총회 예정일(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년 ○○월 ○○일
- ⑤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정관상 주주총회 선임사항인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② 변경사유 : 전 대표이사의 사임,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한 경영합리화 실현
- ③ 이사회결의일(또는 주주총회일) : ○○○○년 ○○월 ○○일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약력】

성 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 요 경 력	소유 주식수	지분비율	비고
				%	

○○주식회사 상호 변경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변경내용 : (변경전) ○○주식회사(영문명 xx Co., Ltd)
(변경후) ○○주식회사(영문명 yy Co., Ltd)
- ② 변경사유 : 기업내 CI 통합작업 일환

③ 주총예정일 : ○○○○년 ○○월 ○○일

④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사업목적 변경(추가)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정관 신규조문대비표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가. 추가내용

-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 및 관련사업 일체
- 냉동·냉장 창고업 및 관련사업 일체

나. 삭제내용

- 교육서비스업

다. 변경내용

- 변경전 :
- 변경후 :

② 변경 주요이유 : 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종 다변화

③ 사업 추진일정 : 변경(추가, 삭제)된 사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허가(등록)여부 및 인허가(등록)신청예정일, 자금조달, 사업계획 등 사업목적 변경내용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주총예정일 : ○○○○년 ○○월 ○○일

⑤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세부내용 참조 : p.19)

○○주식회사 흡수(피흡수, 신설, 간이, 소규모) 합병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① 합병방법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② 합병목적 : 경영합리화
- ③ 합병비율 :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주식 1주당 교부할 존속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④ 합병비율 산출근거 :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 ○○주식회사의 1주당 가치 : ○,○○○원
 - ○○주식회사의 1주당 가치 : ○,○○○원
- ⑤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 ⑥ 합병대상회사
 - 가. 회사명 : ○○주식회사
 - 나. 대표자 :
 - 다. 자본금 :
 -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 ○○○주(액면가 : ○○○원)
 - 마. 주요사업 :
 - 바. 본점소재지 :
 - 사. 회사와의 관계 :

아.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현재)

- 자산총계 : ○○○,○○○,○○○원 - 자 본 금 : ○○○,○○○,○○○원
- 부채총계 : ○○○,○○○,○○○원 - 매 출 액 : ○○,○○○,○○○원
- 자본총계 : ○○○,○○○,○○○원 - 당기순이익 : ○○,○○○,○○○원

⑦ 소멸회사

가. 회사명 : ○○주식회사

나. 대표자 :

다. 자본금 :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 ○○○주(액면가 : ○○○원)

마. 주요사업 :

바. 본점소재지 :

⑧ 존속(신설)합병회사

가. 회사명 : ○○주식회사(대표자 : ○○○)

나. 자본금 : ○○○,○○○,○○○원

다. 주요사업 :

라. K-OTC 등록 여부 : 등록 유지

⑨ 합병일정

가. 주주총회 예정일 : ○○○○년 ○○월 ○○일

나. 구주권 제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합병기일 : ○○○○년 ○○월 ○○일

바. 합병등기예정일 : ○○○○년 ○○월 ○○일

사. 신주(권) 교부예정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년 ○○월 ○○일

- ⑩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흡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⑪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⑫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주주 총회에정일자 등 관련없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이 란에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임을 기재

○○주식회사 분할(분할합병)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분할[분할합병] 방법 : 인적분할/물적분할
- ② 분할[분할합병] 목적 : 경영합리화
- ③ 분할[분할합병] 비율 : 존속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④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 ⑤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회사의 내용
 - 가. 회사명 : ○○주식회사
 - 나. 대표자 :
 - 다. 자본금 : ○○○,○○○,○○○원
 -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 ○○○주(액면가 : ○○○원)
 - 마. 주요사업 :
 - 바. 본점소재지 :
 - 사. 분할 후 등록유지여부 : 등록유지
- ⑥ 분할[분할합병] 후 설립회사
 - 가. 회사명 : ○○주식회사

나. 대표자 :

다. 자본금 :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 〇〇〇주(액면가 : 〇〇〇원)

마. 주요사업 :

바. 본점 소재지 :

⑦ 감자에 관한 사항

가. 감자비율 :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나. 구주권 제출기간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라. 신주(권) 교부예정일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⑧ 주주총회 예정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⑨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⑩ 분할[분할합병] 기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⑪ 분할[분할합병]등기 예정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⑫ 이사회결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⑬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〇〇주식회사 흡수(피흡수, 신설, 간이, 소규모)합병 결의내용 일부변경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가.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나. 합병 승인 주총 예정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다.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변경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합병기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② 변경사유 : 피흡수합병회사와의 합병 실사 일정 연기

③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흡수합병 결의 취소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취소사유 : 피합병회사의 합병여건 불충분

②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가액 결정

➡ 신고시기 : 주주총회소집 통지 시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주식매수청구가액 : ○,○○○원
- ② 산정기준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산정된 가액 등
- ③ 주식매수청구기간 및 장소
가. 주식매수청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장소 : ○○도 ○○시 ○○동 ○○번지
- ④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 : ○○○○년 ○○월 ○○일 현재 ○○주식회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주총회전까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주주에 한함
- 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등은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⑥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영업양도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양도영업 : 중장비 판매사업
- ② 양도영업 주요내용 : ○○제품 제조·판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 ③ 양도가액 : ○○,○○○,○○○원
- ④ 양도목적 : 이질사업 정리를 통한 주력사업에 회사역량 집중
- ⑤ 양도예정일 : ○○○○년 ○○월 ○○일
- ⑥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 등)
- ⑦ 영업양도 영향
가. 양도대금 유입으로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
나. 업종단순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
- ⑧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영업 양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⑨ 주주총회 예정일 : ○○○○년 ○○월 ○○일
- ⑩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⑪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식회사 영업양수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양수영업 : 중장비 판매사업
- ② 양수영업 주요내용 : ○○제품 제조 ·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 ③ 양수가액 : ○○,○○○,○○○원
- ④ 양수목적 : 사업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 ⑤ 양수예정일 : ○○○○년 ○○월 ○○일
- ⑥ 양도법인내역
 - 가. 회사명 : ○○○○주식회사
 - 나. 자본금 : ○○,○○○,○○○원
 - 다. 주요사업 :
 - 라. 본점소재지 : ○○도 ○○구 ○○동 ○○번지
 - 마.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계열회사 등
- ⑦ 영업양수 영향 : 영업양수에 따라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상의 주요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⑧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⑨ 주주총회 예정일 : ○○○○년 ○○월 ○○일

⑩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⑪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식회사 영업양도(양수) 결의내용 일부변경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신고서류 : 이사회회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사항 : 양도가액 (변경전) ○,○○○,○○○,○○○원

(변경후) ○,○○○,○○○,○○○원

② 변경사유 : 양수인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③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가격 결정

➡ 신고시기 :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주식매수청구가격 : ○,○○○원(액면가 : ○,○○○원)

② 산출방법 :

※ 이사회에서 결의한 산출방법을 기재함

③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상법」 제374조의2 등 관련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영업양도(양수) 결의 주총 부결

- ➡ 신고시기 : 주총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부결내용 : ○○주식회사로의 ○○사업부문 양도의 건
 - ② 부결사유 : 영업양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추정
 - ③ 출석주식수 및 찬반주식수
 - 가. 출석주식수 : ○○○,○○○주(발행주식총수의 ○○.○○%)
 - 나. 출석주식수 중 찬성주식수 : ○○,○○○주(발행주식총수의 ○.○○%)
 - 다. 출석주식수 중 반대주식수 : ○○,○○○주(발행주식총수의 ○.○○%)
 - ④ 주총일 : ○○○○년 ○○월 ○○일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영업양도(양수) 결의 취소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취소내용 : ○○주식회사로의 ○○사업부문 양도의 건
 - ② 취소사유 : 양수인과의 양도가액 합의 결렬
 - ③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영업양도(양수)를 위한 임시주총 불성립

- ➡ 신고시기 : 주주총회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불성립사유 : 주주 전원 불참
- ② 주총일 : ○○○○년 ○○월 ○○일
- ③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6. 법률 등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세부내용 참조 : p.33)

-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파산을 신청한 때,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이 있을 때,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임)

○○주식회사 해산사유 발생

- ➡ 신고시기 : 사유발생일 당일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결의,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등으로 구분 기재
- ② 해산내용 : “파산신청”의 경우 “파산신청 내용 및 이유, 관할법원 등”,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내용, 이유, 관할법원 등”을, “주총의 해산결의”시에는 “결의내용 및 이유 등”을 기재
- ③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년 ○○월 ○○일
- ④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주요일정 :
 - 나. 대 책 :

7. 증자 또는 감자 (세부내용 참조 : p.35)

○○주식회사 ○○○○ 유상증자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공 통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또는 우선주 ○○,○○○주
- ② 1주당 액면가액 : ○○○원
- ③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가. 보통주 : ○○○,○○○주
 - 나. 우선주 : ○○,○○○주
- ④ 자금조달의 목적
 - 가. 시설자금 : ○○,○○○,○○○원
 - 나. 운영자금 : ○○,○○○,○○○원
 - 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원
 - 라. 기타자금 : ○○,○○○,○○○원
- ⑤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주주배정 증자

- ⑥ 신주발행가액
 - 가. 보통주 : ○,○○○원
 - 나. 우선주 : ○,○○○원
- ⑦ 신주배정기준일 : ○○○○년 ○○월 ○○일

- ⑧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〇.〇〇〇〇〇〇〇주(소수점 7자리)
- ⑨ 청약(예정) 기간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⑩ 납입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⑪ 실권주 처리계획 : 추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
- ⑫ 신주의 배당기산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⑬ 신주(권)교부예정일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⑭ 이사회결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⑮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주주우선공모 증자

- ⑥ 신주발행가액
가. 보통주 : 〇,〇〇〇원
나. 우선주 : 〇,〇〇〇원
- ⑦ 신주배정기준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⑧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〇.〇〇〇〇〇〇〇(소수점 7자리)
- ⑨ 청약(예정)기간
가. 구 주 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나. 일반공모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⑩ 납입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⑪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함
- ⑫ 신주의 배당기산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⑬ 신주(권)교부예정일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년 ○○월 ○○일

⑭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⑮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일반공모 증자

⑥ 신주발행가액

가. 보통주 : ○,○○○원

나. 우선주 : ○,○○○원

⑦ 신주배정방법 : 청약주식수에 안분 비례하여 배정

⑧ 청약(예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납입일 : ○○○○년 ○○월 ○○일

⑩ 신주의 배당기산일 : ○○○○년 ○○월 ○○일

⑪ 신주(권)교부예정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년 ○○월 ○○일

⑫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⑬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증자

⑥ 신주발행가액

가. 보통주 : ○,○○○원

나. 우선주 : ○,○○○원

⑦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조(제3자배정 유상증자)

- ⑧ 납입일 : ○○○○년 ○○월 ○○일
- ⑨ 신주의 배당기산일 : ○○○○년 ○○월 ○○일
- ⑩ 신주(권)교부예정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년 ○○월 ○○일
- ⑪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⑫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나.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을 면제받는 경우

- 가. 상기 제3자배정에 의한 발행주식 전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전자등록)하고 그 예탁(전자등록)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하기로 함
- 나.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출자전환의 경우

- － 상기 유상증자는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차입금 상계임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주)	비고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주요주주, 기타		

○○주식회사 ○○○○ 유상증자 결의 일부변경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가. 배정기준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나. 청약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다. 납입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라. 신주(권)교부예정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② 변경사유 : ○○에 따른 증자일정 순연, 공시담당자 착오

③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 유상증자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② 단수주식수 : ○○○주

③ 실권주식수 : ○○○주

④ 처리방법

가. 제3자배정 : ○○○주

- ○○○(회사와의 관계) ○○○주, ○○○(회사와의 관계) ○○○주

나. 미발행 : ○○○주

⑤ 청약결과

가. 발행예정주식수 : ○○,○○○주

나. 총 청약주식수 : ○○,○○○주

다. 실권주 및 단수주 : ○○○주

⑥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변경전 배정주식수(주)	변경후 배정주식수(주)	비고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주요주주, 기타			

○○주식회사 ○○○○ 유상증자 결의 취소(철회)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② 발행예정금액 : ○○○,○○○,○○○원

③ 취소(철회)사유 : 신규사업 진출환경 등 제반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현 시점에서 유상증자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취소함

- ④ 투자자보호상 문제 :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음
- ⑤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무상증자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우선주 ○○,○○○주
- ② 1주당 액면가액 : ○,○○○원
- ③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가. 보통주 : ○,○○○,○○○주
- 나. 우선주 : ○,○○○,○○○주
- ④ 신주배정기준일 : ○○○○년 ○○월 ○○일
- ⑤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가. 보통주 : ○.○○○○○○○○주(소수점 7자리)
- 나. 우선주 : ○.○○○○○○○○주(소수점 7자리)
- ⑥ 신주의 배당기산일 : ○○○○년 ○○월 ○○일
- ⑦ 신주(권)교부예정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년 ○○월 ○○일
- ⑧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⑨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나. 상기 무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다. 단수주 처리방법 :
- ※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수주 처리방법을 기재함
- 라. 무상증자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재평가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〇〇주식회사 무상증자 결의 일부변경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가. 무상증자 배정비율 : (변경전) 1주당 〇.〇〇〇〇〇〇〇주(소수점 7자리)
(변경후) 1주당 〇.〇〇〇〇〇〇〇주(소수점 7자리)

나. 신주배정기준일 : (변경전)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변경후)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다. 신주의 재원 : (변경전) 주식발행초과금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변경후) 주식발행초과금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라. 신주(권)교부예정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
(변경전)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변경후)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② 변경사유 : 〇〇〇〇

③ 이사회결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관련공시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주식회사 무상증자 결의 취소(철회)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취소(철회)사유 : 〇〇〇〇

② 이사회결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관련공시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주식회사 자본감소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감자는 추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확정

- ①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 ② 1주당 액면가액 : ○,○○○원
- ③ 감자전후 자본금 : ○○,○○○,○○○원 → ○○,○○○,○○○원
- ④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주 → ○,○○○,○○○주
 ※ 액면가 감액인 경우 감자전후 액면가 기재
- ⑤ 감자비율 : ○○.○○%
 ※ 감자비율은 주식의 종류별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기재하되, 주주별로 차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기타”란에 주주별 차등감자비율을 기재
- ⑥ 감자기준일 : ○○○○년 ○○월 ○○일
- ⑦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
 ※ 감자방법은 주식병합, 주식액면가액의 감액, 주식소각 등의 해당 방법을 기재하고,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기타”란에 감자주식의 매수방법 및 1주당 매수가격 등을 기재
- ⑧ 감자사유 :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제고
- ⑨ 감자일정
 - 가. 주주총회예정일 : ○○○○년 ○○월 ○○일
 - 나. 명의개서정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다. 구주권 제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구주권 제출 마감일 전일 ~ 신주 매매거래개시 전일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감자기준일 전일 ~ 신주 매매거래개시 전일)

마. 신주(권) 교부(유통)예정일 : ○○○○년 ○○월 ○○일

바. 신주매매거래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신주권 교부예정일 다음날(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예정일)

⑩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 ○○은행 증권대행부

⑫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⑬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내용은 주총결의 또는 관계기관의 인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함

나. 단주의 처리방법

※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주의 처리방법을 기재함

○○주식회사 자본감소 결의 일부변경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 당일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역

가. 감자기준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나. 주총예정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다. 구주권제출기간 :

(변경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변경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감자방법 : (변경전) 구주(권) ○.○○주를 신주(권) ○.○○주로 병합

(변경후) 구주(권) 〇.〇〇주를 신주(권) 〇.〇〇주로 병합

② 변경사유 : 〇〇〇〇

③ 이사회결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관련공시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주식회사 자본감소 결의 주총부결 또는 취소

➡ 신고시기 : 주주총회결의일, 이사회결의일 당일

➡ 신고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감자 결의안 : 기명식 보통주 1천만주를 500만주로 감자하는 안

② 취소사유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의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감자결의가 취소됨

③ 주총일(이사회결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관련공시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8.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세부내용 참조 : p.46)

〇〇주식회사 주식분할(병합) 결의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추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확정

① 주식분할(병합)내용(분할전 → 분할후)

가. 1주당 액면가액 : 〇〇〇원 → 〇〇〇원

나.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〇〇〇주 → 보통주 〇〇〇주

② 주식분할(병합)일정

가. 주주총회 예정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나. 구주권 제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 ○○○○년 ○○월 ○○일
 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년 ○○월 ○○일 ~ 신주(권) 매매거래개시 전일까지
 마. 명의개서정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바. 신주(권)교부(유통)예정일 : ○○○○년 ○○월 ○○일

- ③ 주식분할(병합)목적 : 유동성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④ 이사회 결의일 : ○○○○년 ○○월 ○○일
- 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일정은 주주총회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주식분할(병합) 결의 일부변경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가. 구주권제출기간 :

(변경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신주의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다. 신주(권) 교부(유통)예정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 ② 변경사유 :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일정 조정

- ③ 이사회 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9.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발행 (세부내용 참조 : p.50)

○○주식회사 제○회 회사채발행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사채의 종류 : 제○회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담보부 여부 등, 회차 표시
- ② 사채의 권면총액(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 ○○,○○○,○○○원
- ③ 사채의 발행일 : ○○○○년 ○○월 ○○일
- ④ 사채의 만기일 : ○○○○년 ○○월 ○○일
- ⑤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만기수익률 ○.○%
- ⑥ 이자지급방법 : 3개월 후급
- ⑦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에 일시상환
- ⑧ 주관회사 :
- ⑨ 지급보증기관 :
- ⑩ 사채의 청약일 : ○○○○년 ○○월 ○○일
- ⑪ 사채의 납입일 : ○○○○년 ○○월 ○○일
- ⑫ 인수자 : ○○(주) (사모의 경우 기재)
- ⑬ 자금의 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자금으로 구분 기재
- ⑭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⑮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식회사 제○회 전환사채발행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사채의 종류 : 제○회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모)전환사채
- ② 사채의 권면총액(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 ○○,○○○,○○○원
- ③ 사채의 발행일 : ○○○○년 ○○월 ○○일
- ④ 사채의 만기일 : ○○○○년 ○○월 ○○일
- ⑤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연 ○.○%, 만기이자율 연 ○.○%
- ⑥ 이자지급방법 : 3개월 후급
- ⑦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에 일시상환
- ⑧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전환비율 : 100%
 - 나. 전환가격 : ○,○○○원(액면가 ○○○원)
 - 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라. 전환청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마.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지급 방법 : 전환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 바. 전환가격의 조정 : 추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주식분할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 ⑨ 사채의 청약일 : ○○○○년 ○○월 ○○일
- ⑩ 사채의 납입일 : ○○○○년 ○○월 ○○일
- ⑪ 인수자 : ○○○ (사모의 경우 기재)
- ⑫ 자금의 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자금으로 구분 기재
- ⑬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⑭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증권 발행 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사채 교부(전자등록)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전자등록)하고 그 예탁(전자등록)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하기로 함
- 나. 발행 후 최초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전자등록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 다.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식회사 제○회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 ➔ 신고시기 :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일 이내(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권리행사청구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사채의 종류 및 권면총액(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 제○회 전환사채(○○○,○○○,○○○원)

② 전환청구 내역

가. 전환권 행사금액 : ○○○,○○○,○○○원

나. 전환가격 : 1주당 ○○○원

다.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총발행주식의 ○.○○%)

③ (신고일현재) 미전환사채 잔액 : ○○○,○○○,○○○원

④ 전환권 행사일 : ○○○○년 ○○월 ○○일

⑤ 신주(권)교부예정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제○회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회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사채의 종류 : 제○회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② 사채의 권면총액(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 ○○,○○○,○○○원
- ③ 사채의 발행일 : ○○○○년 ○○월 ○○일
- ④ 사채의 만기일 : ○○○○년 ○○월 ○○일
- ⑤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연 ○.○%, 만기수익률 연 ○.○%
- ⑥ 이자지급방법 : 3개월 후급
- ⑦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에 일시상환
- ⑧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가. 행사비율 : 100%
 - 나. 행사가격 : ○,○○○원(액면가 ○○○원)
 - 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 여부 : 분리형 · 비분리형
 - 라.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대용납입
 - 마.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바. 권리 행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지급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함
 - 아. 행사가격의 조정 :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 ⑨ 사채의 청약일 : ○○○○년 ○○월 ○○일
- ⑩ 사채의 납입일 : ○○○○년 ○○월 ○○일
- ⑪ 인수자 : ○○○ (사모의 경우 기재)
- ⑫ 자금의 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자금으로 구분 기재

⑬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⑭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증권 발행 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사채 교부(전자등록)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전자등록)하고 그 예탁
(전자등록)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하기로 함

나. 발행 후 최초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전자등록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다.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식회사 제○회 ○○사채 발행 결의내용 일부 변경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역

가. 사채의 만기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나. 원금상환방법 : (변경전) ○○○○
(변경후) ○○○○

다. 청약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라. 납입일 :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② 변경사유 : 유관기관의 권고

③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제○회 ○○사채 발행 취소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내용 : 제○회 ○○사채(발행예정액 : ○○,○○○,○○○원)
- ② 사유 : 투자유치 실패
- ③ 향후대책 : ○○○○
- ④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제○회 ○○사채 (중도) 상환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사채의종류 : 제○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② 사채의 권면총액(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 ○○,○○○,○○○원
- ③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
- ④ 사채의 발행일 : ○○○○년 ○○월 ○○일
- ⑤ 사채의 만기일 : ○○○○년 ○○월 ○○일
- ⑥ 중도상환금액 : ○○,○○○,○○○원
- ⑦ 상환이자 : ○○○,○○○원
- ⑧ 상환후 잔액 : ○○,○○○,○○○원

- ⑨ 상환(예정)일 : ○○○○년 ○○월 ○○일
- ⑩ 상환사유 : 매출호조로 인한 영업자금 및 자본유보율 향상
- ⑪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10.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및 양도

(세부내용 참조 : p.55)

○○주식회사 특허권 취득

- ➔ 신고시기 : 특허취득일(특허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일 이내(단, 등록법인이 특허취득사실을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인지하였음을 소명하고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특허명칭 : 영문명 (국문명) (출원번호 대한민국 제 ○○○○호)
 - ② 특허 주요내용 : 난연제로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합성섬유등의 고분자제품 생산에 있어 열에 대한 안정성, 난연성, 상용성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물질이며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초제로도 사용 가능함
 - ③ 특허권자 : ○○주식회사
 - ④ 특허 취득일자(특허 수수료 납부일자) : ○○○○년 ○○월 ○○일
 - ⑤ 특허 활용 계획 : 새로운 살균 제초제겸 난연제의 기업화 생산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⑥ 특허 취득 사실 확인일자 : ○○○○년 ○○월 ○○일
 -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 특허 취득 사실 확인일 : 수수료 납부일 or 특허 대리인으로부터 공문 등으로 특허 등록 관련 통지받은 날

〇〇주식회사 특허권 양도·양수

- ➡ 신고시기 : 양도(수)결정일(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특허명칭 : 영문명 (국문명) (특허번호 제〇〇〇호)
- ② 특허 주요내용 :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응집제)으로서 규산의 작용으로 응집성 및 침강성을 향상시키는 제품 및 제조관련기술
- ③ 양도(수) 상대방 : 〇〇주식회사(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④ 양도(수)가액 : 〇〇, 〇〇〇, 〇〇〇원
- ⑤ 양도목적(양수목적 및 활용계획)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품 임가공기술 및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생산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⑥ 양도(수)결정일(이사회결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주식회사 실용신안권 취득

- ➡ 신고시기 : 실용신안등록증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실용신안등록증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실용신안 명칭 : 〇〇〇〇〇〇(출원번호 〇〇〇호)
- ② 실용신안 내용 :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손목, 바닥등이 피로하고 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인체공학적인 만곡부위를 설계하여 피로를 줄이고, 강제통풍기능을 장치하여 땀이 나는 것을 방지
- ③ 실용신안권자 : 〇〇〇(주)
- ④ 실용신안등록증 접수일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11. 등록해제 신청 결정 (세부내용 참조 : p.56)

○○주식회사 등록해제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등록해제 추진사유 :
- ② 주총예정일 : ○○○○년 ○○월 ○○일
- ③ 등록해제신청(예정)일 : ○○○○년 ○○월 ○○일
- ④ 투자자보호대책
 - 가. 공개매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나. 공개매수가격 : ○○○원
 - 다. 공개매수방법 : K-OTC시장을 통하여 매수 / 장외매수
 - 라. 기타 : 등록해제 후 6개월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 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매입할 예정
- ⑤ 향후일정 :
- ⑥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일정 및 투자자보호대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공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OTC 등록해제에 따른 투자자보호 대책

- ➡ 신고시기 : 정리매매 개시일(단, 협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신고시기 변경 가능)
- ➡ 신고서류 :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주식매수자 :
- ② 주식매수 청약기간 : K-OTC 등록해제일로부터 6개월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③ 매수대상주식의 종류 :
- ④ 주식매수 예정 주식 수 : 정리매매 후 잔존 소액주주 매도 희망 주식 전부
- ⑤ 주식매수가격 : 1주당 ○○○원
- ⑥ 매수방식 : 장외매수
- ⑦ 주식매수방법 및 결제일 등 :
- ⑧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12. 주식배당 결의 (세부내용 참조 : p.58)

○○주식회사 주식배당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배당기준일 15일 이전)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주당 배당주식수 : 보통주(우선주) ○.○○○○○○○○주(배당률 ○.○○%)
- ② 배당주식총수 : 보통주(우선주) ○○○,○○○주
- ③ 배당기준일 : ○○○○년 ○○월 ○○일
- ④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단주의 처리방법 :
 - 나. 위 주식배당예고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13. 중간배당 결의 (세부내용 참조 : p.59)

○○주식회사 중간배당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주당 배당금 : 보통주 ○○○원(현금배당), 우선주 ○○○원(현금배당)
 - ② 액면 배당률 : 보통주 ○.○%, 우선주 ○.○%
 - ③ 배당금 총액 : ○○,○○○,○○○원(배당주식수 : ○○○,○○○주)
 - ④ 배당기준일 : ○○○○년 ○○월 ○○일
 - ⑤ 배당금지급예정일 : ○○○○년 ○○월 ○○일
 - ⑥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14. 주주총회 개최 및 결과 신고 (세부내용 참조 : p.61)

-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가 종료된 경우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총의사록을 첨부하여 신고

○○주식회사 정기(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정관변경시 신규조문대비표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일시 : ○○○○년 ○○월 ○○일 ○○시
 - ②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층 당사 회의실
 - ③ 의안 주요내용
가. 제○○기(○○○○.○○.○○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기주총의 경우)

나.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주의 금액 : ○,○○○원 → ○,○○○원
- 공고방법의 변경 : ○○○○ → ○○○○
- 상호변경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신주인수권 배제조항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 변경

다.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

라. 감사선임의 건

마.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④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 포함) 선임”을 결의하거나 “집중투표제 도입·폐지”를 결의하는 경우, 공시문안 하단에 아래양식 중 해당 세부내역을 기재

【사내이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상근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상근/ 비상근				한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사외이사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집중투표제 도입·폐지 세부내역】

구 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폐지		

○○ 주식회사 정기(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변경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가. 추가내용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나. 삭제내용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②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정기(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일부변경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

가. 주총일 : (변경전) ○○○○년 ○○월 ○○일 ○○시
(변경후) ○○○○년 ○○월 ○○일 ○○시

나. 주총장소 : (변경전) ○○시 ○○구 ○○동 ○○번지
(변경후) ○○시 ○○구 ○○동 ○○번지

② 변경사유 : ○○○○

③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취소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취소사유 : 영업일부 양도계약과 관련된 조건 협의 지연

②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 ➡ 신고시기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제○○기 재무제표 승인(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 : ○○ - 매 출 액 : ○○
 - 부채총계 : ○○ - 영업이익 : ○○
 - 자본총계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자 본 금 : ○○ - 당기순이익 :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 ② 배당내역 : 배당금 ○○,○○○,○○○원 또는 해당사항 없음
- 현금배당 : 주당 ○○○원 (액면 ○○%)
 - 주식배당 : 주당 ○.○주 (배당률 ○○%)
- ③ 정관 일부변경 : 원안대로 승인
- 가. 1주의 금액 : ○,○○○원 → ○,○○○원
 - 나. 공고방법의 변경 : ○○○○ → ○○○○
 - 다. 신주인수권 배제조항 추가
 -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 변경
- ④ 이사선임(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 : ○○○, ○○○
- ⑤ 감사선임 : ○○○
- ⑥ 이사의 보수한도 : ○○○,○○○,○○○원
- ⑦ 감사의 보수한도 : ○○○,○○○,○○○원
- ⑧ 주총일 : ○○○○년 ○○월 ○○일
-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사내이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상근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상근/ 비상근				한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 부	사외이사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집중투표제 도입·폐지 세부내역】

구 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폐지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결과

- ➡ 신고시기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결의사항

가. 이사선임(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 : ○○○, ○○○

나. 정관 일부변경 : 원안대로 승인

- 발행예정주식수 변경 : ○,○○○,○○○주 → ○,○○○,○○○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 변경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원안대로 승인

② 주총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사내이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 직	최종학력	국 적
			신규/연임				한국

15. 최대주주 변경 (세부내용 참조 : p.63)

○○주식회사 최대주주 변경

- ➡ 신고시기 :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날(양수도체결일 등)로부터 1일이내
- ➡ 신고서류 : 주권양수도 계약서 등 제출가능 관련서류

① 변경내용 : (변경전) 최대주주등 : ○○○

소유주식수 및 비율 : ○○○,○○○주 (○○.○%)

(변경후) 최대주주등 : ○○○

소유주식수 및 비율 : ○○○,○○○주 (○○.○%)

② 변경사유 : 소유지분 양도

- ③ 지분 인수 목적 : 경영참여, 단순투자
- ④ 변경일자 : ○○○○년 ○○월 ○○일
- ⑤ 변경확인일 : ○○○○년 ○○월 ○○일
-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재요령

가) 변경내용중 ‘최대주주등’ 에는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기재
예시) 홍길동 외 3인

나) 소유주식수, 비율은 최대주주 등의 전체주식 및 비율을 기재

다) 기타에는 지분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들 내에서 최대
주주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투자판단에 참고될 사항을 기재

[예시]

* 관계인내 변동 : A(40%), B(10%), C(10%) ⇒ A(10%), B(40%), C(10%)

- A가 특수관계인인 B에게 주식(주, %)을 양도하여 B가 최대주주로 됨

* 외부에서 매수 : A(30%), B(30%), C(10%) ⇒ A(30%), B(40%), C(10%)

- A의 특수관계인인 B가 주식(주, %)을 매수하여 B가 최대주주로 됨

※ 공시문안 하단에 다음의 세부변경내역을 기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관계는 변경전 최대주주,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특수관계인의 경우 비교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함(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의 재무상태(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등)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요사업, 주소지 등)을 별도 기재

16.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세부내용 참조 : p.65)

○○주식회사 중소기업 요건 해당

- ➔ 신고시기 :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중소기업 적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미충족 사유 : 업종변경/규모 확대/합병
- ② 미충족 일자 : ○○○○년 ○○월 ○○일
- ③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유예기간(또는 특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④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또는 특례기간) 만료

- ➔ 신고시기 :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영업일)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만료일 : ○○○○년 ○○월 ○○일
- ② 기타 참고사항

○○주식회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또는 특례) 적용 중단

-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중단사유 :
- ② 중단일 : ○○○○년 ○○월 ○○일
- ③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견기업 요건 해당

- ➡ 신고시기 :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중견기업 적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사유 발생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견기업 요건 미충족

-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미충족 사유 : 업종변경/규모 확대/합병 등
- ② 미충족 일자 : ○○○○년 ○○월 ○○일
- ③ 사유 발생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 연장)

- ➡ 신고시기 :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발급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 ② 벤처기업 유형 : (예시)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 ③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④ 확인일 : ○○○○년 ○○월 ○○일
- ⑤ 기타사항
 - ○○○○년 ○○월 ○○일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주식회사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 ➡ 신고시기 :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영업일)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 신고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유효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②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여부 : 신청/미신청
- ③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일 : ○○○○년 ○○월 ○○일(신청시 기재)
- ④ 기타사항
 - 벤처기업 신청 등으로 유효기간이 만료일에 이어서 연장될 수 있으며, 추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시 예정

○○주식회사 벤처기업 확인 취소

-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취소사유 :
- ② 취소일 : ○○○○년 ○○월 ○○일
- ③ 확인일 : ○○○○년 ○○월 ○○일

17. 횡령·배임 사고 발생 (세부내용 참조 : p.78)

○○주식회사 횡령·배임 혐의발생

-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사고발생내용
 - 가. 내용 :
 - 나. 고소인 :
 - 다. 피고소인 :
- ② 횡령 등 금액
 - 가. 발생금액(원) :
 - 나. 자기자본(원) :
 - 다. 자기자본대비(%) :
- ③ 향후대책 :
- ④ 사고발생일 : ○○○○년 ○○월 ○○일
- ⑤ 확인일 : ○○○○년 ○○월 ○○일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사고발생내용

가. 내용 :

나. 고소인 :

다. 피고소인 :

② 횡령 등 관련사항

가. 발생금액(원) :

나. 자기자본(원) :

다. 자기자본대비(%) :

③ 진행사항 :

④ 진행사항 확인일 : ○○○○년 ○○월 ○○일

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횡령·배임 여부의 사실 확인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 : 법원판결문 사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사고확인내용

가. 내용 :

나. 고소인 :

다. 피고소인 :

② 횡령 등 금액

가. 사실확인금액(원) :

나. 자기자본(원) :

다. 자기자본대비(%) :

③ 향후대책 :

④ 확정일 : ○○○○년 ○○월 ○○일

⑤ 확인일 : ○○○○년 ○○월 ○○일

⑥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일 :

18.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참조 : p.80)

○○주식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조치내용 :

② 주요위반 혐의내용 :

③ 조치기관 :

④ 향후대책 :

⑤ 조치일 : ○○○○년 ○○월 ○○일

⑥ 확인일 : ○○○○년 ○○월 ○○일

⑦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피고인 : (회사와의 관계 :)
- ② 기소내용 :
- ③ 관할법원 :
- ④ 기소일 : ○○○○년 ○○월 ○○일
- ⑤ 향후대책 :
- ⑥ 기소사실 확인일: ○○○○년 ○○월 ○○일
-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고발 등 조치 결과

- ➡ 신고시기 : 확인일 당일
- ➡ 신고서류 : 법원판결문 사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 ① 조치결과 내용 :
- ② 주요 위반내용 :
- ③ 관할법원 또는 검찰 :
- ④ 향후대책 :
- ⑤ 판결·결정일 : ○○○○년 ○○월 ○○일
- ⑥ 확인일 : ○○○○년 ○○월 ○○일
- ⑦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일 :

19.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세부내용 참조 : p.81)

-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 그 사항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이라 판단되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동 사항이 있는 경우(아래 예시 이외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함) 우선 협회에 공시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고, 신고사항일 경우 협회가 안내하는 예시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람

※ 결정된 사항의 추정가액이 각각 K-OTC 등록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자산, 부채 또는 자기자본(=자본총계) 등의 10% 이상일 경우 가급적 신고 요망

[예] 타법인 출자 : 자기자본의 10% 이상시

공사계약 : 직전연도 매출의 10% 이상 등

[예시]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 타법인 출자, 처분, 주식의 취득, 처분을 결정한 때 (자기자본의 10% 이상시)
- 시설을 증설하거나 신규로 시설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때 (자기자본의 10% 이상시)
- 공사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직전연도 매출의 10% 이상시)
- 영업 및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때
- 타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채무보증하기로 결정한 때 (자기자본의 10% 이상시)
- 외화장기차입금 및 장단기차입금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차입 및 상환을 결정한 때 (자기자본의 10% 이상시)
- 등록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권리의 변경, 변조, 위조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

-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반환청구 등의 소송과 합병무효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소송 등이 발생한 때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시)
-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를 결정한 때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시)
-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지사 설치 등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때
- 기술도입계약, 기술이전합의서 및 기술제휴협정을 체결한 때 (자기자본의 10% 이상시)
- 지점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 화재가 발생한 때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시)
- 관계회사가 해산된 때 (자기자본의 10% 이상시)
-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주식회사 타법인주식(출자지분) 취득(처분)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① 대상(처분)회사의 내용

- 가. 회사명 : ○○○(주)(대표 ○○○)
- 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 ○○○,○○○,○○○원(○○,○○○,○○○주)
- 다. 주요사업 : ○○제조 및 판매
- 라. 본점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마. 취득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② 취득(처분)내용

- 가. 취득(처분)금액 및 주식수 : ○○,○○○,○○○원(○○○주)

- 자기자본 : ○○,○○○,○○○원
- 자기자본 대비 : ○○.○○%
- 나. 취득(처분)전/후 소유주식수 및 비율
 - 취득(처분)전 : ○○○주(○○.○○%)
 - 취득(처분)후 : ○○○주(○○.○○%)
- 다. 취득(처분)(예정)일 : ○○○○년 ○○월 ○○일
- ③ 취득(처분)이유 : ○○부분 진출을 통한 경영다각화
- ④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주식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① 부여내역

- 가. 부여대상자 : ○○명
- 나.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 다. 부여방법 : 신주발행 교부/자기주식 교부/차액보상
- 라. 부여일 : ○○○○년 ○○월 ○○일
- 마. 행사가격 : ○○○원(액면가 ○○○원)
- 바.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년 경과한 날로부터 ○년 이내
- 사. 주총예정일 : ○○○○년 ○○월 ○○일
- ② 당해 부여 후 총부여 주식수 : 보통주 ○○○주, 우선주 ○○○주
- ③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④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타 미확정사항은 주주총회에서 확정 후 공시 예정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부여주식수(주)	비고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계열회사, 주요주주, 기타		

○○주식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결의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① 취소내역

가. 취소대상자 : ○○명

나. 취소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다. 부여일 : ○○○○년 ○○월 ○○일

② 취소사유 : 퇴사

③ 취소 후 총 부여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주

④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관련공시일 : ○○○○년 ○○월 ○○일

【대상자별 취소내역】

취소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취소주식수(주)	비고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계열회사, 주요주주, 기타		

○○주식회사 담보제공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① 채무자

- 가. 성명(회사명) : ○○○(주)(대표 ○○○)
- 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 ○○○,○○○,○○○원(○○○,○○○주)
- 다. 주요사업 : ○○제조 및 판매
- 라. 본점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마.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② 채권자 : ○○○

③ 채무(차입)금액 : ○○○,○○○,○○○원

④ 담보제공내역

- 가. 담보설정금액 : ○○○,○○○,○○○원
 - 자기자본 : ○○○,○○○,○○○원
 - 자기자본대비: ○○.○○%
- 나. 담보물 : ○○주식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 ○○은행 정기예금
- 다. 담보제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라. 담보내용 :
- 마. 담보제공 총잔액 : ○○○,○○○,○○○원

⑤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융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담보제공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주식회사 채무보증 결의

- ➡ 신고시기 :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① 채무자

- 가. 성명(회사명) : ○○○(주)(대표 ○○○)
- 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 ○○○,○○○,○○○원(○○○,○○○주)
- 다. 주요사업 : ○○제조 및 판매
- 라. 본점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마.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② 채권자 : ○○○

③ 채무(차입)금액 : ○○○,○○○,○○○원

④ 채무보증내역

- 가. 채무보증금액 : ○○○,○○○,○○○원
 - 자기자본 : ○○○,○○○,○○○원
 - 자기자본대비: ○○.○○%
- 나. 채무보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다. 채무내용 : 시설자금 대출
- 라. 채무보증 총잔액 : ○○○,○○○,○○○원

⑤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판매·공급계약 체결

- ➡ 신고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계약서 사본

- ① 계약내용 : ○○○
- ② 계약상대방 : ○○○(주)
 - 회사와의 관계 :
- ③ 계약금액 : ○○○,○○○,○○○원
 - 최근 매출액 : ○○○,○○○,○○○원
 - 최근 매출액 대비 : ○○.○○%
- ④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판매·공급 지역 :
- ⑥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공사계약 체결

- ➡ 신고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
- ➡ 신고서류 : 계약서 사본

- ① 공 사 명 : ○○○
- ② 계약상대방 : ○○○(주)
- ③ 계약금액 : ○○○,○○○,○○○원
- ④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공사장소 : ○○시 ○○구 ○○동 ○○번지
- ⑥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소송 피소(결과)

➡ 신고서류 : 소송 관련 서류(소장, 결정문 부분 등) 사본

① 소송당사자

가. 원고 : ○○○

나. 피고 : ○○○(주)

② 소의 명칭 : ○○○○ 취소청구의 소(사건명칭 ○○○○○○○○○○)

③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④ 소송의 취지(판결 내용) :

⑤ 향후대책 :

⑥ 소장부분(판결문) 접수일(확인일) : ○○○○년 ○○월 ○○일

Ⅲ. K-OTC시장 운영규정

Ⅲ. 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 2014. 6. 17
 개정 2016. 6. 21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4. 18
 개정 2017. 6. 20
 개정 2018. 2. 8
 개정 2018. 12. 11
 개정 2019. 6. 11
 개정 2019. 9. 9
 개정 2020. 3. 11
 개정 2020. 10. 20
 개정 2022. 2. 22
 개정 2022. 5. 18
 개정 2022. 10. 18
 개정 2024. 2. 20
 개정 2024. 6.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 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OTC시장”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 1의2.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9.9.>
2. “등록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업부에 등록된 주권(이하 “등록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3. “지정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주권(이하 “지정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4. “신규등록”이란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등록기업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규지정”이란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등록신청회사”란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를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8.>
9.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1., 2022.10.18.>
10. “자본전액잠식”이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한다.
11.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12.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3. “호가”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K-OTC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량, 가격 등의 매매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14. “호가중개”란 협회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중개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5. “영업일”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6. “호가중개시스템”이란 K-OTC시장에서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가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7.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말하며,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0.>
18. “반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반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반기보고서를 말하며,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0.>
19. “조회공시”란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펀딩”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기준) ①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10.20.>

②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0.10.20.>

제4조(소속부 구분) ① 협회는 K-OTC시장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등록기업부 : 등록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2. 지정기업부 : 지정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② 지정법인이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제2장 등록 및 지정

제1절 등록 및 등록해제

제5조(신규등록요건)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신규등록신청일 현재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보통주식(신규등록신청 전에 보통주식

으로 전환된 종류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권을 말한다]의 금액(이하 “크라우드펀딩금액”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K-OTC시장 신규등록 추천을 받은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 제322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개정 2019.9.9.>
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7호 본문의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설 2018.12.11., 개정 2022.10.18.>
8. 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설 2022.10.18.>
9. 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신설 2022.10.18.>

제6조(신규등록신청) ①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회사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인수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2. 정관 2부
 3. 법인등기부등본 2부
 4. K-OTC시장에서의 주권의 매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부
 - 가.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서
 - 나.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
 - 다.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시서류
 5.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부(최근 사업연도 이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6.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개정 2019.9.9.>
 7. 명의개서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8.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 2부 <개정 2020.10.20.>
 9.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른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0.10.20.>
 - 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발행한 해당 기업의 크라우드펀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 나.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가 발행한 K-OTC시장 등록 추천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10.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20.10.20.>
-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미 발행한 주식 중 일부만을 등록신청할 수 없다. 다만,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7조(등록결정 등) ① 협회는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협회는 등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등록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등록법인(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 한다.

제7조의2(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신청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신청회사는 협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서류

③ 협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4조의2에 따른 K-OTC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8조(변경 및 추가등록) ① 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 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을 준 용한다.

1. 변경(추가)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3.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전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개정 2019.9.9.>
 4.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협회는 제1항의 변경(추가)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10영업일은 5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0.10.20.>

제9조(등록해제) ① 협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한다. 다만, 제3호 단서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등록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1.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3.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클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12.11., 개정 2020.10.20.>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6.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개정 2018.12.11.>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9.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12.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 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 따른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하며, 위 실질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를 통틀어 이하 “실질주주명부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등록일(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부변경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9.9.>
 - 가. 보통주식의 소액주주의 수가 50인 미만
 - 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

13.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3.11.>
 14.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5.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6. 임직원 등(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관련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만, 횡령·배임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10.18.>
 17.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업의 계속성 또는 K-OTC시장의 건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제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2018.12.11., 2022.10.18>
- ② 제1항제12호를 적용함에 있어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실질주주명부등(전산파일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하 “주주명부요약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해당 등록법인의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해당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거나, 등록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요약표등을 정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9., 2020.10.20.>
- ③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등록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종목을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제10조(등록해제신청) ① 등록법인이 등록종목의 등록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등록해제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2. 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종류주식만을 등록해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한다) 사본 2부
 3.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11조(등록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협회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등록해제 주권 등의 신규등록 제한)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법인은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 ① 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8>

제2절 지정 및 지정해제

제14조(신규지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1.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2. 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 나.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 다. 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였을 것 <신설 2014.12.16.>
 3.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등록신청일까지”는 “지정결정일의 10영업일전까지”로 본다. <개정 2020.10.20.>
- ② 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③ 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지정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지정내용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제15조(변경 및 추가지정) ① 협회는 지정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추가)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정보 등을 통하여 지정종목의 변경(추가) 여부를 확인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변경(추가)지정을 할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지정해제) ① 협회는 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0.3.11., 2022.10.18.>

1. 신규 지정의 근거가 된 지정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되어 해당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여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경우 신규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정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3.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근 4개 사업연도”는 “최근 4개 사업연도(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로, “등록”은 “지정”으로 본다. <신설 2020.3.11.>
 - ③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법원의 공고,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공개하는 은행 당좌거래정지 정보 등을 통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제16조의2(지정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협회는 제16조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

을 정하여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1.]

제17조(지정해제 주권 등의 신규지정 제한) 협회는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매매거래

제1절 K-OTC시장의 운영

제18조(매매거래시간) ① K-OTC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16.6.2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 호가중개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연초의 개장일 또는 연말의 폐장일의 경우
3. 그 밖에 협회가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휴장)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OTC시장을 휴장한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K-OTC시장을 개장할 수 있다.

제20조(매매의 중개) K-OTC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 간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는 협회가 행한다.

제2절 매매거래의 수탁

제21조(계좌의 설정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인대우 외국인(이하 “내국인대우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개정 2024.2.20.>
2. 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3. 비밀번호
4. 호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 외국인의 경우 국적(또는 영주권), 국내거주 여부 <개정 2024.2.20.>
 6. 투자자분류코드(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주문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위탁증거금 납부에 관한 사항
 3.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중요내용 등
- ④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최초로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기 전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K-OTC시장 제도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위험성 등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주문수탁 기재사항)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종목명
2. 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 가. 신규의 주문
 - 나. 기 제출된 주문의 정정
 - 다. 기 제출된 주문의 취소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수량 및 가격
5. 주문의 접수시간

제24조(수탁의 방법) ①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3. 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②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2.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

제25조(수탁의 거부)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제26조(위탁증거금)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매매거래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약속서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22.>

제27조(계좌예의 기록)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매수대금, 매도증권 등의 수입, 예탁, 반환, 인도, 지급 등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수수료)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결제 시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절 호가 및 매매방법 등

제29조(매매개시일)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은 신규등록 승인일(신규지정 결정일) 또는 변경(추가)등록 승인일[변경(추가)지정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협회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제30조(호가의 제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간 내에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2. 종목
3. 가격

4. 수량
5.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6.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7. 지점명 또는 지점번호
8. 처리구분(정상, 정정, 취소)
9. 주문번호(정정, 취소의 경우 원주문번호)
10. 계좌번호
11. 투자자분류코드
12. 외국인의 경우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 거주 여부 및 외국인 식별수단의 유무의 구분. 다만, 내국민대우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3.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홈트레이딩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 나. 개인휴대단말기 및 무선 인터넷폰을 통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
 - 다. 주식 주문 전용단말기를 통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
 - 라.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및 MAC 주소
 - 마. 그 밖에 위탁자의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③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권에 대하여 결제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의 호가,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의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호가의 효력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는 호가제출 당일 중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 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으로 처리한다.

제32조(호가의 가격제한폭) ① 종목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호가단위) 종목의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호가의 접수) ① 협회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호가를 접수한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보다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여 낮은 매도호가
2.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호가보다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여 높은 매수호가

제35조(매매방법) ①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당사자 간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킨다.

-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할 경우 동일한 가격의 호가 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제36조(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 ① 협회는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이

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인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2. 종목명
3. 가격 및 수량
4.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5.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 번호

제37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협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2020.10.20.>

1. 제49조에서 정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거나 지정법인이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영업일간 <개정 2024.2.20.>
2.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3. 등록해제사유(제9조제1항제8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지정해제사유(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14호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다만, 제9조 제1항제3호(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확인된 날부터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3영업일째가 되는 날(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13.>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등록해제사유 제9조제1항제8호가 발생한 경우 : 확인일 익영업일 <신설 2016.12.13.>

4. 등록법인에 대하여 제47조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 시 그 제출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다만,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0.>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서면결의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

다. 협회는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개정 2019.9.9.>

7. 호가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가중개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8.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해당 혐의 확인일과 그 익영업일 <신설 2022.10.18.>
 9. 제45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의 제출일까지 <신설 2022.10.18.>
 10.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유발생일의 익영업일 <신설 2024.2.20.>
 11. 제54조제1항에 따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 : 조치일 <신설 2024.6.18.>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영업일간 <개정 2022.10.18., 2024.2.20., 2024.6.18>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지정종목이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신설 2020.10.20., 개정 2024.2.20>
 - ④ 제11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매매거래 기간 중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0.>

제38조(착오매매의 정정) ① 금융투자회사는 K-OTC시장에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에 착오매매정정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체결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착오매매의 정정은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증권 또는 현금으

로 한다.

제4절 매매거래의 결제

제39조(결제기구) ① K-OTC시장의 결제기구는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② 매매거래의 결제는 제1항의 결제기구를 통하여야 한다.

제40조(결제방법) ① 협회는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매매체결내용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K-OTC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는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에 결제한다.

제41조(결제의 위임금지) 금융투자회사는 제39조에 따른 매매거래의 결제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2조(결제관련 규정) ① 매매자료의 통보, 매매자료의 정정, 결제자료의 작성, 그 밖에 결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②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법인의 공시

제43조(적용범위) 이 장은 등록법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20.>

제44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① 등록법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등록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품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등록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45조(주요경영사항의 신고) ① 등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 등
 (이하 “전자문서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20.10.20., 2022.10.18>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기각·개시결정·개시결정취소
 -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 다.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 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 마.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4.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상
 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5.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6. 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7.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8.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9.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10. 등록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11.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12.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1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14.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15.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가 변경된 때 <개정 2018.12.11.>
16.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개정 2018.2.8.>
17.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배임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 다만,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 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10.18.>
18. 등록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하거나 검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기소한 사실 또는 그 결과가 확인된 때 <신설 2022.10.18.>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개정 2014.12.16., 2022.10.18>

-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의 신고시기, 신고내용, 신고서류 등 세부적인 공시요령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6조(정기공시서류의 제출) 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부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160조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반기검토보고서와 함께 각 법정제출기한 내에 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47조(조회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품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48조(공시기간의 계산 등) ①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45조 및 제47조의 공시기간은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계산한다

3. 제46조의 공시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시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② 공시접수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협회가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신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①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신고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반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② 협회는 등록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0.10.20.>
2.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등록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0조(협회의 공시 등) ① 협회는 등록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46조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1조(공시책임자의 신고)** ① 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해당 등록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 ②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명을 정하여 협회에 신고(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K-OTC시장의 관리

- 제52조(시세공표)** ① 협회는 K-OTC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호가 등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 등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세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일의 기준가격
 2. 당일의 매매가격[현재가, 전일대비(기준가격 대비 현재의 시세), 고가, 저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3. 거래량 및 거래대금
 4. 종목의 호가 및 호가수량
- ③ 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53조(안내사항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1. 소속부 변경
 2. 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등록(지정) 및 등록(지정)해제 종목, 제37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3.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명 및 지연 내용·이유 등 제반 사항 <개정 2020.3.11.>
 5.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회는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다만, 제5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자기자본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부(-)인 상태를 말한다] 상태인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클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0.20.>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개정 2020.10.20., 2022.10.18>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 공시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
 -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7. 등록법인이 제9조제1항제12호(신규등록일 또는 소속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에 해당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8.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등록법인의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신설 2022.10.18.>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8.>
- ③ 협회는 지정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신설 2020.3.11>

제54조(권리락 조치 등) ①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8.>

1. 기준일의 직전거래일. 다만,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거래일 <개정 2020.10.20.>
 2. 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 정지일은 제외한다)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개정 2020.10.20.>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협회는 K-OTC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일을 정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지정종목이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협회는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법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제54조의2(K-OTC시장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K-OTC시장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본조신설 2018.12.11.]

제54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K-OTC시장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의 K-OTC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54조의4(위원회의 심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등록 또는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2. 제9조제1항제17호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22.10.18>

② 협회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K-OTC시장의 운영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1.]

제54조의5(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협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제54조의4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하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협회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본조신설 2018.12.11.]

제6장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

제55조(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 ① 협회는 K-OTC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예방조치요구 등에 따라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매 분기의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영업일(제1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까지 해당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의 선정기준, 예방조치요구 기준 및 예방조치요구 절차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의2(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공표 등) ①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1.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3.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 ⑤ 협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지정예외·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⑦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지정예외·지정해제·공표 및 매매거래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0.]

제7장 보칙

제56조(거래자격 등) ①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전자문서) 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법인이 협회에 제출 또는 신고해

야 하는 공시 및 각종 서류(이하 “서류 등” 이라 한다)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출 또는 신고한 서류 등이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8]

제57조(호가게시판 운영)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77조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의 장외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가격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의2(K-OTC PRO 운영) ① 협회는 전문투자자 등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협회가 인정하는 자(이하 “K-OTC PRO 회원” 이라 한다)가 영 제178조제1항제2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의2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분증권의 장외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K-OTC PRO 회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K-OTC PRO 시스템” 이라 한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K-OTC PRO 회원의 자격,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 K-OTC PRO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20.>

제58조(거래수수료)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호가게시판을 통하여 매매를 체결한 경우 매매약정대금의 10,0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거래수수료를 해당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거래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필요한 서식 등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중 협회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및 폐지) ①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2호 중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을 “「K-OTC시장 운영규정」” 으로 개정한다.

②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이하 “중전의 규정” 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을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중전의 규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등록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 법인과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하 “기존 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2016사업연도(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부터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후단(반기 매출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호를 적용한다.

②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2016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반기 분부터 제9조제1항제6호후단 중 반기 매출액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기 전에는 기존 법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제5조(투자유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 분부터 제53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7호를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 분부터 같은 항 제5호나목을 적용한다.

제6조(거래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이 규정 시행 후 K-OTC시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호가게시판을 통하여 매매가 체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8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소속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

제10조(매매거래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리보드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56조에 따라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6.21)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18)

이 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6.20)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8)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11)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6.11)

이 규정은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2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4호) 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9)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된 것을 가리킨다)」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0)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2)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22.5.1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18.)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제53조제2항, 제54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0호 및 제55조의2는 개정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18.)

이 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IV.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IV.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7. 11
개정	2014. 12. 19
개정	2018. 2. 8
개정	2018. 12. 11
개정	2019. 6. 10
개정	2019. 9. 11
개정	2020. 3. 12
개정	2020. 10. 20
개정	2022. 5. 19
개정	2022. 11. 2
개정	2022. 12. 27
개정	2024. 6. 1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등록요건) 규정 제5조제8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인 경우
2.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등록신청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

3. 등록신청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4.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 양수를 하고 등록신청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최대주주(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 단, 양수 대상인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등록신청회사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 간의 자산양수(양수하는 자산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한정한다) 또는 현물출자(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고 등록신청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 변경된 경우. 단,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결과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2조의2(신규등록신청 서류) 규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록신청회사 협약서 2부
2.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의무 이행 협약서 2부
3.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2부
4. 거래은행 의견서 2부
5.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4.12.19.>

6.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8.2.8.>
7. 규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등록신청 전에 해당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신설 2020.10.20.>
8.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의 거래 확인서 <신설 2022.11.2.>
9.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4.12.19., 2022.11.2.>

제3조(등록해제) ① 규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 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란 유상증자 또는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

제3조의2(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본조신설 2014.12.19.]

제3조의3(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②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견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본조신설 2014.12.19.]

제4조(투자자분류코드) 규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자분류코드”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조(투자자 유의사항)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K-OTC시장의 성격
2. 지정기업부의 특징
3. 매매방식
4. 공시수준
5. 기업정보 확인방법
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8. 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9.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신설 2014.12.19.>
10. 그 밖에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12.19.>

제6조(기준가격)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7조(가격제한폭) ①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제3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이란 신규등록종목 및 신규지정종목을 말하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의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다.

1. 최저호가가격 : 30%
2. 최고호가가격 : 500%

제8조(호가가격단위) 규정 제33조에서 “호가가격단위”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9조(불합리한 호가의 제한)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란 각각 5호가가격단위를 말한다.

제9조의2(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등) ① 규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 본문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종목이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다시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산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 재개일을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로 본다.

[본조신설 2024.6.19.]

제9조의3(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수시공시사항) 규정 제45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등록법인이 해당 유예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개정 2020.3.12.>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기간이 중단된 경우 <개정 2020.3.12.>

2. 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8.2.8>

가.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개정 2020.3.12., 개정 2022.5.19>

3.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벤처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0.10.20..>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다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연속하여 새로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0.10.20..>

[본조신설 2014.12.19.]

제9조의4(횡령 등의 수시공시) 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0조(수시공시사항 공시요령) 규정 제45조제2항에서 “세부적인 공시요령”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1조(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①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1) 주가 상승률이 25% 이상
- 2)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
- 3)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4)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나.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1) 주가 하락률이 25% 이상
- 2)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3)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4)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2.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 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 수량의 90%이상인 종목

3.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상승

나.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도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하락

4.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15일째 되는 날의 매수 관여율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 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5.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가상승률이 25% 이상

나. 특정 계좌 또는 특정 계좌와 주문매체식별번호(IP 등)가 동일한 계좌[이하

“특정계좌(군)”이라 한다]의 매수 관여율 합산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다.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6.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7.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8. 그 밖에 협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적용한다.

1. 기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변경등록(또는 변경지정)되는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2. 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3.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4. 등록(또는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다만, 규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정리매매종목

3.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4. 천재지변,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5. 협회가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19.]

제12조(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등) ①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한 날부터 매매거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한 날부터 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같다) 중 최고가
2. 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3. 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4.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다. 제2항제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항제5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다. 제2항제5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 제2항제6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된 경우 및 같은 기간 중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이전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날에 중복하여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회의 지정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7. 제2항제7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그 해제일 전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
 - 나.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 이후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 8.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② 협회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1.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 2.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이상인 종목
 - 3.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 4.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나. 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5.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1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나. 최근 1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6.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인 종목
- 7. 제5항제1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③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적용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정리매매종목
 - 2.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 ⑤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가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제1항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제1항제4호·제5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직전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본조신설 2024.6.19.]

제13조(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등) ①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2. 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3. 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 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4.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다. 제2항제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5. 제2항제5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
 -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다. 제2항제5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 1.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인 종목
 - 2.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인 종목
 - 3.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 이상인 종목
 - 4.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나. 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5.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가. 최근 1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나. 최근 1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때 “최근 3일간”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3일간”으로, “최근 5일간”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5일간”으로, “최근 15일간”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이후의 날로서 최근 15일간”으로 본다. 다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해제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④ 협회는 투자위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가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이 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이 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본조신설 2024.6.19.]

제14조(기간의 계산 등) ①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기간의 계산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주가는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당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하되, 당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 그 기세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권리락, 주식분할 등으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재개된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의 주가상승·하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3항제1호의 기준일의 주가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주가로

한다.

③ 제9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가상승·하락률, 매수·매도 관여율의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가상승·하락률=[(비교일의 주가-기준일의 주가)/기준일의 주가]×100
2. 매수·매도 관여율=[일정기간 특정 계좌의 매수·매도 수량/일정기간 전체 매수·매도 수량]×100

[본조신설 2024.6.19.]

제15조(거래수수료) ① 규정 제58조에 따른 K-OTC시장의 거래수수료율은 10,000분의 9로 한다. <개정 2020.10.20.>

② 협회는 매매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일의 금융투자회사별 거래수수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매월 합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결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거래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제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제2조의2제1호의 “등록신청회사 협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2.>
3. 제2조의2제2호의 “공시의무 이행 협약서”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11.2.>
4. 규정 제51조제2항 및 이 세칙 제2조의2제3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11.2.>
5. 제2조의2제4호의 “거래은행 의견서”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11.2.>
6. 제2조의2제5호 및 제3조의2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4.12.19., 개정 2022.11.2.>
7. 제2조의2제6호 및 제3조의3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8.2.8., 개정 2022.11.2.>
8.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의 “변경(추가)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12.19.>

9. 규정 제9조제2항의 “주주명부요약표”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12.19.>
10.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해제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12.19.>
11.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다목의 “K-OTC시장 지정 동의서”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4.12.19.>
12. 규정 제38조제1항의 “착오매매정정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12.19.>
13. 규정 제6조제1항제9호나목의 “K-OTC시장 등록 추천서” :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0.10.20.>
14. 제2조의2제8호의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의 거래 확인서” :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2.11.2.>

부 칙 (2014.7.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시행일) 「K-OTC시장 운영규정」(2014년 6월 17일에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부칙 제1조에 따라 동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규정 제14조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세칙의 폐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매매거래개시일의 가격제한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개시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준가격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는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개시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기세는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기세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0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등록법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등록법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 14096호로 제정된 것을 가리킨다)」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시행일) 규정(2022년 5월 18일 개정 규정을 말한다) 부칙 (2022.2.22.)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022년 5월 20일 당일을 말한다.

부 칙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9조의3,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4의 개정세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시행일) 규정(2024년 2월 20일 개정 규정을 말한다) 부칙 제1조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2일을 말한다.

(별표 1)

투자자분류코드

구분	코드
1. 금융투자업자	1000
2. 보험회사	2000
3. 집합투자기구	
가. 나목 외의 집합투자기구	3000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3100
4. 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제3호로 분류)	4000
5. 기타 금융기관	5000
6. 연금, 기금 및 공제회	6000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700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법인	7100
9. 개인	8000

(별표 2) 〈개정 2014.12.19., 2019.6.10., 2022.11.2., 2024.6.19.〉

기준가격

구 분	산정기준
1. 신규등록 및 신규지정 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주당순자산가치. 다만, 주당순자산가치가 최저호가가격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최초 매매개시 이후의 기준가격	
가.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직전일의 총거래대금÷직전일의 총거래주식수)
나.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 다만, 직전 영업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세
다.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 × 분할(또는 병합)비율
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종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1) 무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 (2) 유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으로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종목 (3)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배당을 예고하여 배당락되는 종목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배당락주가. 다만, 이론권리락·배당락주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가 정한 가격
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 회사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순자산분할비율) ÷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종류별 주식수
3. 추가등록(지정) 신주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추가등록(지정) 신주의 최초 매매개시일의 구주의 기준가격
4. 그 밖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한 가격

- (주) 1. 매매기준가격 산정 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주당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지정법인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 : 주당순자산가치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자기주식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등록신청일(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결정일의 직전 영업일로부터 소급하여 3영업일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한다)의 증감액] ÷ 등록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발행주식 중 부채로 회계처리한 주식은 제외한다)
3. 기세 산정 방법
- 가. 장종료시 기준가격보다 낮은(높은) 매도호가(매수호가)의 합계액이 총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매도호가(매수호가)의 수량가중평균가격[해당 매도호가(매수호가)의 합계액을 해당 매도호가(매수호가)의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을 기세로 한다. 다만, 해당 수량가중평균가격보다 높은(낮은) 매수호가(매도호가)의 합계액이 총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호가(매도호가) 중 최고가격(최저가격)을 기세로 한다.
- 나. 장종료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와 높은 매수호가 모두 있거나 규정 제37조에 따라 당일 중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장종료 10분 전 현재 유효한 호가를 기준으로 가목 및 나목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세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종료시에 기세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라.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세가 기준가격 대비 ±15%의 범위를 벗

어나는 경우[신규등록종목 및 신규지정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에는 기준가격에 50% 및 300%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가격의 범위(이하 “매매거래개시일 기세한도”라 한다)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기준가격 대비 $\pm 15\%$ (신규등록종목 및 신규지정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에는 매매거래개시일 기세한도) 이내의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 대비 $\pm 15\%$ 이내의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격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매매거래개시일 기세한도는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마. 가목의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호가는 장종료 10분 전까지 접수된 호가 중 장종료시 유효한 호가에 한한다. 이 경우 해당 호가가 장종료 10분 전 이후에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정분을 제외한다.

4.

가. 이론권리락주가 산정 방법

$$\text{이론권리락주가 (또는 조정주가)} = \frac{\text{기준주가} + \text{발행가액} \times \text{증자비율}}{1 + \text{증자비율}}$$

나. 이론배당락주가 산정 방법

$$\text{이론배당락주가 (또는 조정주가)} = \frac{\text{기준주가} \times \text{배당 전 보통주식수}}{\text{배당 후 보통주식수}}$$

5. “순자산분할비율”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 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을 말한다. 다만, 변경등록 또는 변경지정 신청일 현재의 변경등록(지정)종목의 순자산가액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또는

검토)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의 변경등록(지정)종목의 순자산가액과 각각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순자산분할비율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6. “분할합병 전 회사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순자산 분할비율”은 분할합병 전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합병 전 회사별로 산출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별표 3) <개정 2022.12.27.>

호가가격단위

주 식 가 격	호가가격단위
2,000원 미만	1 원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5 원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10 원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 원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100 원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 원
500,000원 이상	1,000 원

(별표 4) <개정 2014.12.19., 2019.09.11., 2020.3.12., 2022.11.2., 2024.6.19.>

수시공시사항 공시요령

* ()는 보충설명, [] 는 별도 공시사항의 경우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1. 부도, 은행과의 거래정지, 금지 또는 재개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때	부 도 발 생 일 당일	◎ 부도발생 1. 부도금액 2. 부도발생 은행 3. 부도발생일 4. 영향 및 대책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
나. 은행거래가 정지, 금지된 때	거 래 정 지(금 지) 일 당일	◎ 은행거래정지(금지) 1. 거래정지(금지) 은행 2. 거래정지(금지)일 3. 거래정지(금지) 이유 4. 영향 및 대책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다. 은행거래가 재개된 때	거 래 재 개 일 당일	◎ 은행거래재개 1. 거래재개은행 2. 거래정지일 3. 거래재개일 4. 거래재개이유 5. 영향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가. 주된 영업면허, 영업인가가 취소, 반납된 때	사 유 발 생 일 당일	● 주된 영업면허(인가) 취소 [반납] 1. 면허(인가)내용 2. 면허시가(장부가액) 3. 취소 [반납] 이유 4. 영향 및 대책 5. 취소 [반납] 일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나. 주된 공장에서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재개된 때	사 유 발 생 일 당일	● 주된 공장 생산활동 중단 [재개] 1. 공장명 및 소재지 2. 해당 공장의 생산액 및 비율 3. 중단 [재개] 일시 및 기간 4. 중단 [재개] 사유 5. 손실 [수익] 예상액 6. 영향 및 대책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다. 주된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이 정지되거나 재개된 때	사 유 발 생 일 당일	● 주된 생산품 판매활동 정지 [재개] 1. 판매활동 정지 [재개] 수량 및 규모 2. 정지 [재개] 일시 및 기간 3. 정지 [재개] 사유 4. 손실 [수익] 예상액 5. 영향 및 대책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 등의 신청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종결 신청·폐지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결정하거나 신청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사회 결의일 (회사결정일) 또는 신청사실 확인일 당일	● 회생절차 개시 [종결, 폐지], 파산 신청(결의) 1. 신청인 2. 관할법원 3. 신청 내용 4. 신청 이유 5. 신청후 대책 6. 신청일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이사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 가능 관계서류 첨부	
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개시 결정취소, 종결 결정, 폐지결정,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결과), 회생계획 인가 (불인가), 파산신청 기각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확인일 당일	● 회생절차, 파산 관련 법원 결정, 관계인집회 소집 및 그 결과 1. 결정일 2. 관할 법원 3. 결정 내용 4. 결정후 대책 5. 결정통보 접수일	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 가능 관계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4. 본점소재지,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상호 또는 사업목적 변경				정관 변경이 필요한 본점소재지, 상호, 사업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
가. 본점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본점소재지 변경 1. 변경내용 2. 변경이유 3. 이사회 결의일 4. 주주총회 예정일(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첨부	
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가 변경된 때	이사회결의일(정관상 주주총회 선임사항인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1일 이내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 1. 변경내용 2. 변경이유 3. 이사회 결의일(주주총회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첨부	
다. 상호변경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상호변경 결의 1. 변경내용 2. 변경이유 3. 주주총회 예정일 4. 이사회 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라. 사업목적 변경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업목적 변경 결의 1. 변경내용 2. 변경이유 3. 주주총회 예정일 4. 이사회 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5.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합병(흡수, 피흡수, 신설, 간이 및 소규모 합병 포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당일	● 흡수 (피흡수, 신설, 간이, 소규모) 합병 결의 1. 합병이유(목적) 2. 합병방법 3. 대상(소멸)회사의 내용 가. 회사명 나. 대표자 다. 자본금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마. 주요사업 바. 본점소재지 4. 합병비율 및 그 근거 5. 합병후 (신설)회사의 내용 가. 회사명 나. 대표자 다. 자본금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마. 주요사업 바. 본점소재지 6.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및 배당기산일 7. 합병일정 가. 합병기일 나. 주주총회 예정일 다. 합병계약일 8. 이사회 결의일	이 사 회 의 사 록 사본 첨부	피흡수 합병인 경우 등록해제사유에 해당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당일	● 영업양도 (양수) 결의 1. 양도 (양수) 이유 2. 양도 (양수) 목적물 3. 양도 (양수) 자 4. 양도 (양수) 가액 5. 양도 (양수) 일 6. 양도 (양수) 영향 7. 주주총회 예정일 8.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다.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당일	● 분할 (분할합병) 결의 1. 분할 (분할합병) 이유 2. 분할 (분할합병) 방법 3. 분할로 설립 (분할합병) 될 회사의 내용 가. 회사명 나. 대표자 다. 자본금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마. 주요사업 바. 본점소재지 4. 분할 (분할합병) 비율과 조건 5. 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 회사의 내용 가. 회사명 나. 대표자 다. 자본금 라. 발행주식수 및 1주의 금액 마. 주요사업 바. 본점소재지 6. 분할 (분할합병) 일정 가. 분할 (분할합병) 기일 나. 주총예정일 7.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6. 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가.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	사 유 발 생 일 당일	● 존속기간 만료 [정관상 사유] 로 해산 1. 해산내용 2. 해산이유 3. 해산일정 4. 대 책 5. 사유발생일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나. 법원의 해산 명령, 해산판 결이 있을 때	해산명령 [판결] 일 당일	● 해산명령 [판결] 1. 관할법원 2. 해산명령 [판결] 내용 3. 해산명령 [판결] 이유 4. 해산명령 [판결] 일	법원판결문 사본 등 제출 가능 관계서류 첨부	
다.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 을 때	주 주 총 회 일 당일	● 주주총회 해산결의 1. 해산결의 내용 2. 해산결의 이유 3. 해산일정 4. 주주총회일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 가능 관계서류 첨부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 항임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7. 증자 또는 감자 가.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당일	● 유상증자 결의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 3. 신주의 배정기준일 4. 신주의 배정방법(비율등) 5. 청약기간 (구주주, 공모 구분) 6. 납입일 7. 신주의 배당기산일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9. 기타사항(자금의 용도 등) 10. 이사회결의일	이사회회사록 사본 첨부	제3자 배정, 출자전환, 유상증자 포함
나. 무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당일	● 무상증자 결의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 3. 신주의 배정기준일 4. 신주의 배정비율 5. 신주의 배당기산일 6. 신주의 재원 7. 기타사항 8. 이사회결의일	이사회회사록 사본 첨부	
다. 감자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당일	● 감자 결의 1. 감자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감자방법 3. 감자기준일 4. 감자비율 5. 감자일정 6. 감자이유 7. 기타사항 8. 주주총회예정일 9. 이사회결의일	이사회회사록 사본 첨부	감자는 주주 총회 특별 결의 사항임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8. 주식분할, 주식 병합 또는 액면 주식과 무액면주 식의 상호전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	● 주식분할 (병합) , 액면 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 결의 1. 분할 (병합, 전환) 내용 2. 분할 (병합, 전환) 일정 3. 분할 (병합, 전환) 이유 4. 주총예정일 5.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주 주 총 회 특별결의 사항임
9. 사채 발행				
가. 회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	● 회사채발행 결의 1. 사채의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전자 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3. 사채의 발행가액 4. 사채의 이율 5. 이자지급 방법 6. 원금상환 방법 7. 사채권의 종류(실물 발행의 경우) 8. 주관회사 9. 지급보증기관 10. 인수자(사모의 경우) 11. 자금의 용도 12. 발행(납입)예정일 13.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나. 전환사채 발행 에 관한 결정 이 있을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	● 전환사채발행 결의 1. 사채의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전자 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3. 사채의 이율 4. 이자지급 방법 5. 원금상환 방법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	6.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비율 나. 전환가격 다. 전환으로 발행될 주 식의 종류 라. 전환으로 발행될 주 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지급 방법 마. 전환청구 기간 바. 전환가격의 조정 7. 주관회사(사모의 경우 인수자) 8. 자금의 용도 9. 발행(납입)예정일 10. 이사회결의일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의 1. 사채의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전자 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 전자등록총액) 3. 사채의 이율 4. 이자지급방법 5. 원금상환방법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행사비율 나. 행사가격 다.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종류 라.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 당금 및 이자지급방법 마. 행사가격의 조정 7. 주관회사(사모의 경우 인수자) 8. 자금의 용도 9. 발행(납입)예정일 10. 이사회 결의일	이 사회의 사록 사본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10. 특허권 취득, 양수 또는 양도 가.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 한 때	특허취득일 (특허수수료 납부일)로부 터 1일 이내 (다만,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일 이내)	● 특허 취득 1. 특허권자 2. 특허출원국 및 출원번호 3. 특허의 명칭 4. 특허의 내용 5. 특허 활용 계획 6. 특허취득일(특허수수료 납부일) 7. 특허 취득 사실 확인일	특허수수료 납 부확인증 사본 등 제출가능 관 계서류 첨부	
나.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하 여 취득한 특 허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양수 [양도] 결정일(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특허권 양수 [양도] 1. 양수 [양도] 특허명칭 2. 양수 [양도] 특허내용 3. 양수 [양도] 가액 4. 양수 [양도] 이유 5. 결정일(이사회결의일)	이사회이사록 사본 등 제출 가능 관계서류 첨부	
11. 등록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	● 등록해제신청 결의 1. 신청사유 2. 등록해제에 따른 영향 및 대책 3. 신청예정일 4. 이사회결의일	이사회이사록 사본 첨부	
12. 주식배당에 관한 이 사 회 결 의 가 있는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배당기 준일 15일전)	● 주식배당 결의 1. 주당 배당주식수 2. 배당주식총수 3. 배당기준일 4. 단주의 처리방법 5. 이사회결의일 6. 기타사항	이사회이사록 사본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1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	● 중간배당 결의 1. 배당금액(배당률 포함) 2. 배당방법 3. 배당기산일 4. 기타사항 5.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14. 주주총회 개최				
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1일 이내	● 주주총회 개최 결의 1. 주주총회 예정일 2. 장소 3. 주요 부의안건 4.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나.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주주총회결의 일로부터 1일 이내	● 주주총회 결과 1. 부의안건의 결의내용 2. 주주총회일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첨부	
15.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 부터 1일 이내	● 최대주주 변경내용 1. 최대주주 변경내용 가. 변경전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및 비율 나. 변경후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및 비율 2. 변경 사유 3. 변경확인일	주권 양수도 계약서 등 제출 가능 관계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16.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				
가. 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1)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일 익일	● 중소기업 지위 취득 1. 중소기업 적용기간 2. 사유 발생 확인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사본 등 첨부	
(2)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확인일 당일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1. 미충족 사유 2. 미충족 일자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유예기간 4. 사유 발생 확인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사본 등 첨부	
(3)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만료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전 2 영업일째 가 되는 날 당일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만료 1.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만료일 2. 기타 참고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4)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적용 중단	확인일 당일	●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적용 중단 1.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적용 중단 사유 2.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적용 중단일 3. 사유 발생 확인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나. 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1)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일 익일	● 중견기업 지위 취득 1. 중견기업 적용기간 2. 사유발생 확인일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 본 등 첨부	
(2)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확인일 당일	● 중견기업 요건 미충족 1. 미충족 사유 2. 미충족 일자 3. 사유발생 확인일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 본 등 첨부	
다.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1)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확인일 익일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1. 발급기관 2. 벤처기업 유형 3. 벤처기업 유효기간 4. 발급사실 확인일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2)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1. 유효기간 만료일 2.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여부 및 신청일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 인서발급신청 서 등 증빙서 류 첨부	
(3) 벤처기업확인 취소	확인일 당일	● 벤처기업확인 취소 1. 취소사유 2. 취소일 3. 사유 발생 확인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17. 횡령·배임 사고 발생				
가. 횡령·배임 혐의발생	확인일 당일	● 횡령·배임 발생 1. 사고발생내용 2. 횡령 등 금액 3. 향후대책 4. 사고발생일 5. 확인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나. 횡령·배임 혐의 진행 사항	확인일 당일	● 횡령·배임 혐의 진행 사항 1. 사고발생내용 2. 횡령 등 관련사항 3. 진행사항 4. 진행사항 확인일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다. 횡령·배임 여부의 사실 확인	확인일 당일	● 횡령·배임 사실 확인 1. 사고 확인 내용 2. 횡령 등 금액 3. 향후대책 4. 확정일 5. 확인일 6.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법원판결문 사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가능 관계 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18.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확인일 당일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1. 조치내용 2. 주요위반 혐의내용 3. 조치기관 4. 향후대책 5. 조치일 6. 확인일 7.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확인일 당일	●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1. 피고인 2. 기소내용 3. 관할법원 4. 기소일 5. 향후대책 6. 기소사실 확인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결과	확인일 당일	●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조치결과 1. 조치결과 내용 2. 주요 위반내용 3. 관할법원 또는 검찰 4. 향후대책 5. 판결 결정일 6. 확인일 7.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법원판결문 사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가능 관계 서류 첨부	

공 시 사 항	공 시 요 령			비 고
	신 고 시 기	세 부 신 고 내 용	신 고 서 류	
1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사실발생 당일 또는 1일 이내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신고사항을 고려)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신고내용을 고려하여 공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 서류 첨부	

(별지)

업무에 관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OO주식회사는 귀 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K-OTC시장에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기명·무기명	종 류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배당기산일	비 고

주) “1주의 금액”란에는 액면주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 무액면주식의 경우 1주당 자본금을 기재

년 월 일

OO 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11., 2022.11.2.>

등록신청회사 약약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당사는 당사의 발행주식을 K-OTC시장에 등록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 사항이 진실이 아니거나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함으로써 귀회,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약약합니다.

1. 제출되는 등록신청서(추가·변경등록신청서 포함) 및 첨부서류는 진실이며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였음
2. 등록신청일 현재 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등록해제사유 및 제5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발행주식을 등록신청함에 있어 「K-OTC시장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공시 및 신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
4. 「K-OTC시장 운영규정」 제4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등록신청 당시 발생한 상태이거나 신청일 이후 등록승인일까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년 월 일

OO 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규변경) 신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당사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다 음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공시책임자				사무실 전화 : 휴대 전화 : e-mail 주소 :
공시담당자				사무실 전화 : 휴대 전화 : e-mail 주소 :

※ 공시책임자 : 담당 임원
공시담당자 : 담당 직원(대리급 이상)

년 월 일

OO 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거래은행 의견서

1. 발행회사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사 :
- 주 소 :

2. 발행회사에 대한 거래은행의 의견

- 상기 발행회사는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거래은행
지 점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4.12.19., 개정 2020.3.12.>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1. 중소기업 여부^{주1)} :
2. 중소기업 해당인 경우 적용기간^{주2)} :
3. 중소기업 간주 회사의 경우 간주기간

:

주1)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신규등록신청 회사는 신청일 현재)을 기준으로 '해당', '미해당', '중소기업 간주 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회사)로 기재

주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을 기재

※ 중소기업 여부에 '해당', '중소기업 간주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8.2.8., 개정 2020.3.12., 개정 2022.5.19>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1. 중견기업 해당여부^{주1)}:
2. 중견기업 해당인 경우 적용기간^{주2)}:

주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미해당' 기재

주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재

- ※ ① '중견기업에 해당'인 경우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견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업종이 주된 영업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업별 사업수익금액 등) 첨부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12.19., 2019.09.11.>

변경(추가)등록신청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OO회사 발행주식을 등록종목으로 변경(추가)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1. 변경(추가) 사유 :
2.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 :
3. 변경(추가)지정 신청 내용

구 분	종목명	기명·무기명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배당기산일	비 고
변경(추가)전						
추 가 분						
변경(추가)후						

4. 신주권교부예정일(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유통일을 말한다) :

년 월 일

OO 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12.19>

주주명부요약표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당사의 보통주식의 주주분포 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다 음

작성기준일 :

구 분		주주수 등	주식수 (단위:주)	비 율	비 고
5% 이상 소유주주	주주명	× × ×		00.00 %	최대주주의 처(예시)
		△△△		00.00 %	상무이사(예시)
	소 계	○○ 명		00.00 %	
1% 이상 5% 미만 소유주주		○○ 명		00.00 %	
1% 미만 소유주주 (소액주주)		○○ 명		00.00 %	
우리사주조합		○○ 명		00.00 %	
합 계		○○ 명		100 %	

주1) 작성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말(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일) 현재

주2) 5% 이상 소유주주는 각 주주별로 기재하고, 최대주주 또는 회사와의 관계를 비교에 기재

주3) 우리사주조합은 별도로 기재하고, 주주수 란에 우리사주조합원 수를 기재

주4) 비율은 보통주식 발행 총수 대비 비율이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년 월 일

OO 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12.19>

등록해제신청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하

OO주식회사는 등록종목의 등록을 해제하고자 「K-OTC시장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1. 발행회사 :
2. 등록주권 내용(주식의 종류 및 등록주식수) :
3. 등록해제 사유 :
4. 등록해제 결의일(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OO 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12.19>

착오매매 정정신청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귀 하

정정신청일시 :

「K-OTC시장 운영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착오매매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매매거래 일자 : 년 월 일

2. 정정내용

[illegible]

※ 비고란에는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를 표시

3. 첨부서류 : 착오매매 사유서 및 착오매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0.10.20.>

K-OTC시장 등록 추천서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로서 「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제2호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라우드펀딩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K-OTC시장 등록을 추천합니다.

1. 추천 대상 기업

가. 기 업 명 :
나. 대 표 자 :
다. 사업자등록번호 :
라. 주 소 :

2. 추천 사유

상기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 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K-OTC시장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3. 기타 사항

년 월 일

추천기관 :

대표이사 : (인)

〈 작성 요령 〉

1. “추천 대상 기업”은 추천 대상 기업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2. “추천 사유”는 추천 대상 기업의 크라우드펀딩(2억원 이상) 성공 여부, K-OTC시장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 “크라우드펀딩(2억원 이상) 성공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다.

나. “K-OTC시장 등록요건 충족 여부”는 추천 대상 기업의 「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기타 사항”은 K-OTC시장 등록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항을 기재한다. (단,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 당해 추천기관과 추천 대상 기업 간 출자, 보증, 대출 등 금전적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

나. 기타 K-OTC시장 등록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참고할만한 사항

※ 당해 추천기관은 추천서 작성 또는 상기 내용 확인 등과 관련하여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2.11.2.>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 거래 확인서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 하

당사는 다음의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합니다.

- 다 음 -

1. 종합 확인사항(등록신청 시점과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 모두 거래대상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가	당사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입니까	예, 아니오
나	당사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당사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다	당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라	당사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 양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2-가로 이동
마	당사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자산양수(양수하는 자산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한정한다)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2-나로 이동
바	당사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현물출자(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2-다로 이동

* 주요출자자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최대주주(이하 같다)

2.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관련 추가 확인사항

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 영업양수 관련 사항(위 1-라 항목의 답변이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

양수대상 상장법인 명칭		양수대상 영업부문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 양수대상 영업부문 자산액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 * 양수대상 영업부문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 :	
주주총회일		영업양수 기준일	

나.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양수에 관한 사항(위 1-마 항목의 답변이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

상장법인 명칭	
지분증권 양도자 명단 및 양도자별 양도 주식 수	
지분증권 양도자 중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해당 양도자 및 그 관계*	
지분증권 양수 후 당사의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 소유 지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 양수 후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에 대한 당사의 소유 지분율	
지분증권을 양수받는(은) 날	

* 지분증권 양도자와 지분증권 발행기업의 관계를 말한다.(발행기업의 최대주주, 5% 이상 소유주주, 대표이사, 임원 등으로 기재한다)

다.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위 1-바 항목의 답변이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

현물출자자 명단 및 현물출자자별 납입 주식 수	
현물출자자 중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 및 그 관계*	
현물출자 결과 당사의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 소유 지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 현물출자 결과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당사의 소유 지분율	
법원 인가(예정)일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일	

* 현물출자자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 관계를 말한다.(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5% 이상 소유주주, 대표이사, 임원 등으로 기재한다)

3. 등록신청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사항

※ 위 “2-가, 2-나, 2-다” 중 하나 이상의 답변이 '예'인 경우만 기재한다.

최대주주 변경 여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 예, 아니오
변경내역	- 최대주주 변경일 : - 변경 전 당사의 최대주주명 : - 변경 후 당사의 최대주주명 : ※ 관계* : - 변경 후 당사의 최대주주 소유 지분율 : - 변경 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소유 지분율 :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기재

* 최대주주 변경 후 당사의 최대주주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관계를 말한다.(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5% 이상 소유주주, 대표이사, 임원 등으로 기재한다)

※ 위의 1. 종합 확인사항 항목 중 어느 하나의 답변이 '예'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위의 1.~3. 답변내용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